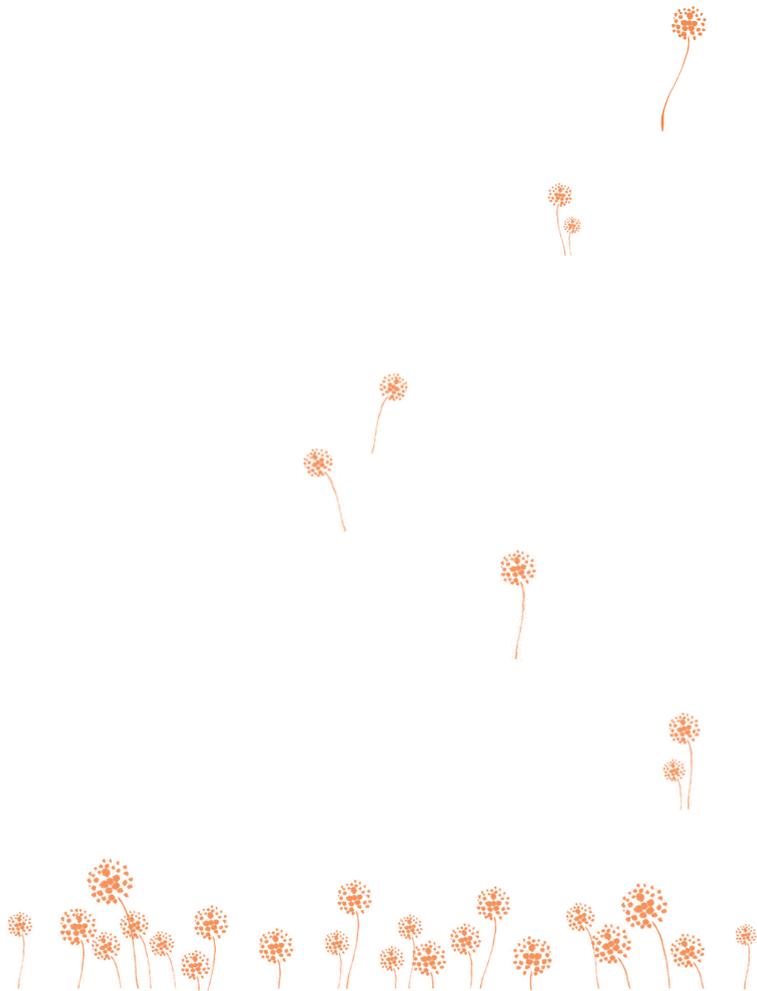


2011 연간보고서



공익변화그룹 공감



04 프롤로그

07 2011 공감 10장면



48 한 눈에 보는 공감



72 공감 살림살이

76 2011 기부자와 공감의 알콩달콩이야기

78 후원안내

79 공감과 함께하신 분들

82 에필로그

06 공감 소개

11 공감의 활동

- 여성인권 _ 12
- 장애인권 _ 16
- 이주·난민 _ 20
- 빈곤·복지 _ 24
- 국제인권 _ 28
- 취약계층노동 _ 32
- 성소수자 _ 36
- 공익법 일반 _ 40
- 공익법 교육·중개 _ 44



68 공감이 걸어온 길

74 2011 기부자 인터뷰



프롤로그

공감은 ‘인권’이라는 나침반에 의지해 법과 제도의 길을 모색해 왔습니다.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를 통해 법과 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상식, 새로운 마음의 길을 함께 만들어가고자 했습니다.

2011년을 정리하며, 그동안 활동의 기본이 되었던

‘공감, 인권, 법’의 의미를 다시 새겨보고자 합니다.

공감 共感, empath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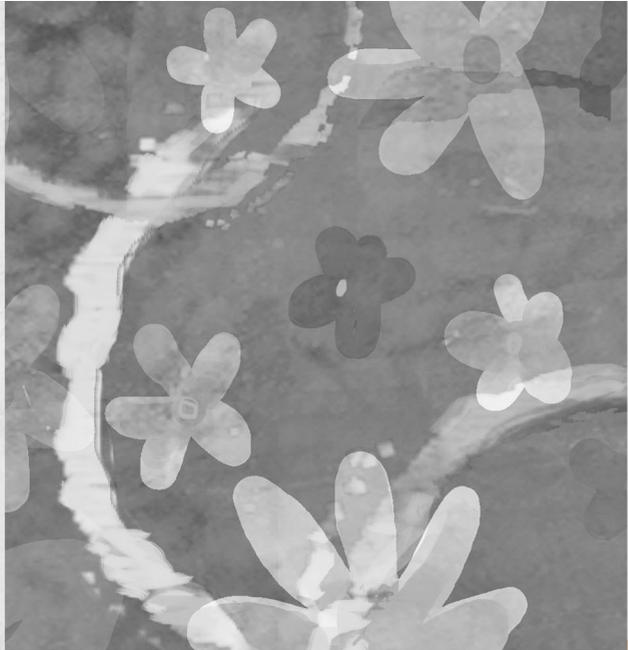
공감(共感, empathy)을 ‘입장의 동일함에 이르는 마음의 길’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신영복 선생님은 “立場의 同一함, 그것은 關係의 최고형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입장의 동일함’에 다다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공감’하는 능력이 아닐까 합니다.

인권 人權, human right

인권은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는 구체적 삶의 현장에서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권리 주장입니다.
 들리지 않았던 그 목소리를 마음으로 듣고 응답하는 것,
 그것이 ‘공감’(共感, empathy)이라는
 마음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법 法, law

법전은 전형적으로 형용사, 부사가 철저히 배제된 건조한 언어의 구조물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문서보다도, 법전에는 뜨거운 형용사, 부사들이 생략된 채로 우글거리며 웅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의 해석'은 단지 법전에 기록된 명사와 동사를 해석하는 작업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법의 실천은 법전에는 기록되지 않은 삶의 목소리들을 통해서 오늘의 현실을 돌아보고, 내일의 제도를 준비하는 일이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난 8년 - 공감, 인권, 법

지난 8년, 공감이 함께 걸어온 인권의 길은 아직은 여전히 흔적(痕迹)에 불과합니다. 적지 않은 시간 활동을 해왔음에도 뚜렷한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감, 인권, 법'이라는 의미들을 다시 되새기다 보면, 한방의 변화를 쫓는 것은 조급함의 표현일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길은 함께 걷는 실천"일 것입니다. 더 많은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하며 '공감' (共感, empathy)하는 마음의 길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 많은 격려와 질책을 기다립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共感)은

비영리로 운영되며 공익활동을 본업으로 삼은 공익변호사들의 모임입니다.

공감의 지향

1.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 및 인권의 경계 확장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구체적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환경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우리 사회 인권의 경계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2. 변화를 지향하는 법적 실천

우리 사회의 적극적인 변화가 모색되는 다양한 지점에서 법률전문가가 할 수 있는 실천들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3. 공익법 활동의 활성화

법을 인권 보장과 사회 변화를 위한 열린 도구로 기능하게 하는 실천을 '공익법 활동'으로 공유하고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이러한 실천이 '공익법 활동'으로 공감대를 만들고 널리 퍼져, '법'을 인권 보장과 사회 변화를 위한 열린 도구로 쓰는 다양한 흐름이 효과적으로 모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그리는 길,
변화와 인권의 가치를 지향하는 공감이 함께합니다.

공감 10 장면



1 도가니 대책위원회 활동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2011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익이사'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광주 인화학교에서 벌어진 미성년 장애인 성폭력과 진상 은폐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 상영으로 사회복지법인에서의 인권 침해와 비리에 대한 온 국민의 분노와 관심이 촉발된지 3개월, 시설인권연대가 활동을 시작한 지 7년만의 일입니다. 공감은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도가니 대책위원회(도가니 대책위)'가 꾸러진 때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확보, 시설 생활자 인권보장,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함께 마련하여 각 정당에 제안하였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공익이사제 도입, 사회복지법인 관리·감독 강화, 서비스 최저기준 마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시는 사회복지법인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2 이주노동위원회 출국명령 취소소송 승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11년 2월, 필리핀 국적의 미셀 카투이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이 이주노동 활동을 하기 위해 허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장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체류자격을 취소하고, 3월, 그의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고 출국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공감은 이주노동위원장을 대리하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체류자격취소처분, 출국명령 처분, 체류기간 연장불허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동안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아 2005년 노조가 설립된 이래 이주노동위원회에 대한 표적수사와 단속을 여러 차례 감행했고, 역대 이주노동위원장들은 이른바 미등록 신분으로 강제 출국을 당했습니다. E-9 비자를 받아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던 미셀 이주노동위원장이 받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통보 역시 이주노동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공감은 취소소송에서 미셀 이주노동위원장을 위하여 변론하고, 2011년 9월 15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허위 취업을 이유로 출국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3 ‘난민과 함께하는 플래시몹’ 기획 / 난민법 제정의 결실

공감은 2011년 6월 19일과 20일, 서울역사, 청계천 광장, 대학로와 국회 의사당 앞 잔디밭에서 난민의 날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60주년을 기념하는 ‘난민과 함께하는 플래시몹’을 기획하고 진행하였습니다. 국내 난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회에 제출되어 있던 ‘난민 등의 지위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을 지지하고 난민 관련 법제와 관행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기획된 이 플래시몹에는, 버마난민아동 지원단체 ‘따비에’, 이주민방송국, 난민지원단체, 법률지원단체, 시민사회단체, 국회 인권포럼,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양한 단체가 함께하고 100여 명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난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 29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난민 등의 지위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 「난민법」이라는 제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2008년의 난민NGO 네트워크의 난민 인권 실태조사 및 난민법 제정안 마련, 2009년의 국회 발의, 그 후 2011년까지 지속적인 입법추구 활동 등 장기간에 걸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4 여성노동자 직장내 성희롱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공감은 민주노총의 의뢰로 ‘여성노동자의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 및 대안 연구’라는 주제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 공감은 2011년 2월부터 6월까지 전국의 여성노동자 1700여 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취합하고 여성노동자 14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한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실태조사와 정책대안 연구를 바탕으로 공감은 민주노총과 공동으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개정 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실효적 대응방안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공감은 2012년에도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률의 개정 작업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5 건설 이주노동자 업무방해 사건 변호, 무죄 판결

인천신항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베트남 이주노동자 200여명이 식사시간 문제, 식비 공제 등을 이유로 나흘 동안 단체로 출근을 거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몇 개월 후 이를 불법폭력파업사건으로 기획 수사하여 이주노동자 10명을 업무방해죄로 구속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주노동자들이 단체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구속된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공감에서는 구속된 노동자들을 접견하고, 노동자들의 단순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변론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강제출국의 위기에 있던 베트남 노동자들은 석방되어 노동 현장으로 복귀하였습니다.



6 유신헌법 제53조 및 긴급조치 헌법소원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공감은 지난 10월 군사독재정권의 유산인 1972년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에 참여하였습니다.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는 대통령이 법률보다 우위에 있도록 하고, 긴급조치에 대한 '사법적 권리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봉쇄하여 법치국가원리에 정면으로 위반됩니다. 유신헌법 제53조와 이에 근거하여 내려진 긴급조치로 인하여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헌법소원 사건을 통하여 뒤늦게라도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고 잘못된 헌정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7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운동과 국회 발의

공감은 2011년 한 해동안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의 강제퇴거금지법 제정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을 위한 각종 활동을 펼쳤습니다. 「강제퇴거금지법안」은 2009년 1월 20일의 용산참사를 기억하며 제2의 용산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강제퇴거 금지의 기본원칙과 개발사업에서의 강제퇴거 금지, 재정착 대책의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1년 1월의 용산참사 2주기 기념토론회, 4월부터 6월까지 3차례에 걸친 강제퇴거금지법 쟁점포럼, 10월의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 '강제퇴거 금지 법제화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세미나, 국회의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수정된 「강제퇴거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2012년 1월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정동영 의원 등 33명 발의).



8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NGO보고서 작성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정부 심의회의 NGO 대표단 참가



공감은 2011년 4월부터 6월까지 한국 정부의 제7차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에 대한 NGO 반박보고서 작성에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공감은 인턴들과 전 펠로우들의 참여 하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NGO 반박보고서의 영문본 번역과 감수작업을 책임졌습니다. 한편 공감은 7월 11일부터 29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 정부 심의 세션에도 여성단체, 민변과 함께 NGO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가하여, 위원회가 한국의 여성인권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위원회의 정부 심의에 개입하는 현지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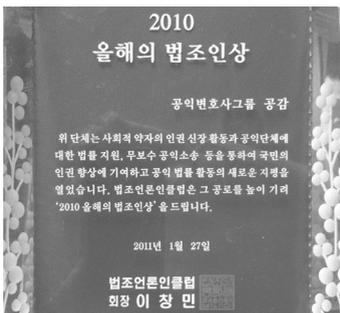
동은 위원회의 한국 정부에 대한 최종견해에 반영되었습니다. 공감은 앞으로도 다른 NGO들과 함께 정부가 위원회의 최종권고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것입니다.

9 공익변호사 라운드테이블

공감에서는 공익변호사로서의 진로를 고민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사법연수생들을 위해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익단체 상근자, 법학전문대학원생·사법연수생들을 초대하여 공익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로 5월부터 8월까지 4회에 걸쳐 ‘공익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였습니다. 5월 첫 번째 모임에서는 ‘공익변호사들의 활동과 전망’, 6월 두 번째 모임에서는 ‘로스쿨에서의 공익변호사 양성방안’, 7월 세 번째 모임에서는 ‘공익단체 상근 변호사들의 평가와 전망’, 8월 네 번째 모임에서는 ‘예비 공익변호사들의 고민과 계획’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0 법조언론인클럽 올해의 법조인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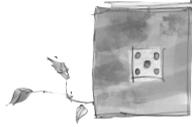
공감은 법조언론인클럽에서 선정한 2010년도 ‘올해의 법조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상은 ‘법률문화 창달에 공이 큰 법조인’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법조언론인클럽은 ‘그동안 공감이 장애인, 이주노동자, 난민 등을 위한 활발한 공익소송으로 차별 철폐와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인권 경계의 확장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공감이 되겠습니다.



공감의 환동

여성인권
장애인권
이주·난민
빈곤·복지
국제인권
취약계층노동
성소수자
공익법 일반
공익법 교육·중개

여성인권



결혼이주민 체류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결혼 10건당 1건이 국제결혼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과 결혼한 이주민들은 안정적인 체류권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으나,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내부적 지침을 공개하지 않고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결혼이주민들의 체류권 보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감이 참여하고 있는 '결혼이주민의 체류권 보장을 위한 연대모임'은 2011년 11월 28일 '결혼이주민 체류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는 결혼이주민의 체류권 보

장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출입국 관리 실무의 구체적 사례를 점검하였습니다.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내·외국인 여성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법률자문·소송지원·법률교육 등을 진행합니다.

또한 여성의 인권보호·복지증진·사회참여를 위한 법·제도 개선활동 및 연구조사 활동을 진행합니다.

인신매매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제정 관련 활동

공감은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인신매매처벌과 피해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계속하였습니다.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단체, 이주여성인권단체, 성매매여성 지원단체, 이주노동단체 등과 함께 「인신매매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였고, 2011년 3월 국회 발의를 이끌어냈습니다(이정희 의원 대표발의). 한편, 공감은 정부가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입법으로 제출한 형법개정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다른 단체들과 연명으로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국회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인신매매를 반드시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형태의 법률을 시급히 제정하여야 할 것이며, 공감은 인신매매피해자 지원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활동에 계속하여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성희롱 피해자가 오히려 해고되는 사회

여성노동자 성희롱 실태조사 및 토론회



소라미 변호사

“니네 집에 가서 자겠다”, “너랑 나랑 여관 가서 자고 나와도 너랑 나랑만 입다물면 누가 알겠냐” 현대자동차 아산 하청공장에서 십여 년간 일해온 여성노동자 7씨에게 소장과 조장이 던진 말이다. 그들은 업무 시간 중에 어깨를 주무르고 뒤에서 껌안기를 일삼았다.

그러나 회사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6개월 정직처분을 내렸다. 회사는 피해자에 대한 징계 이유로 성희롱 피해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피해 진정을 했다. 그러나 진정한 지 2개월 만에 피해자는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했다. 반면 가해자들은 회사에 남았다. 피해자는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으나 도중에 회사가 폐업했다. 가해자를 포함한 모든 직원이 새로운 회사로 고용승계 되었으나 피해자만 배제되었다.

2011. 1.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을 인정하고 가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권고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가해자들은 사과 한마디 없고, 돌아갈 수 있는 회사는 없고, 원청회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한다. 그동안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받고 노동부에서, 검찰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중 삼중 사중으로 조사받고 있다. 었친 데 덮친 격으로 경찰은 2011. 9. 2. 피해자가 1인 시위 중인 여성가족부 앞 농성장을 강제철거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는 있으나 누구도 처벌받지 않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성희롱 피해의 양상을 잘 드러내는 단적인 예다.

위 사건을 계기로 민주노총은 공감에게 ‘여성노동자의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조사를 의뢰했다. 공감은 2011.2~6.까지 5개월간 여성노동자 17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14명을 상대로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그 결과 여성노동자의 39.4%가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성희롱 경험행위수는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이 정규직과 직접고용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성희롱 경험행위수가 높았다. 피해를 경험한 대다수는 성희롱 피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적극적으로 불쾌하다는 표시를 한 것은 직접고용의 경우 15.3%, 간접고용의 경우 19.2%에 불과했다.

실태가 이러함에도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응답한 것은 53.5%에 그쳤다. 또한 성희롱을 처리할 수 있는 사내 고충처리기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70%정도가 없거나 모른다고 답했다. 피해구제 방법 중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28.5%에 불과했다.

실태조사 결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 피해 진정기관이라는 점에 대한 인지 수준은 매우 낮았다. 설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 피해를 인정하고 권고조치를 하더라도 가해자들에게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 앞서 ㄱ씨 사례가 그렇다. 또한 법제도적으로 성희롱 피해에 대한 구제절차가 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점 또한 피해 구제에 장애로 작용한다.

이중, 삼중의 구제절차를 밟으면서 피해 진술을 반복하는 동안 성희롱 피해자는 더욱 피폐해져 간다. 사업주들은 성희롱 피해 사실을 접수했음에도 법적으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기 일쑤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하더라도 한참 시간이 걸린다. 그동안 피해자는 가해자와 매일 대면하는 고통을 감수해야만 한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기도 한다.

독일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성희롱 피해자에게 작업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었다. 참고할만하다. 또한 설문결과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성희롱 경험행위수가 적게 드러난 점을 주목할만하다. 외국 사례의 경우 노동조합이 사업주와 협의 하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질화하고 있었으며 사업주의 성희롱 방지대책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사항으로 강제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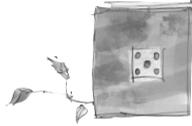
실제 성희롱 피해자들이 조직 내에서 약자의 위치에 처한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했을 때, 노동조합이 성희롱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면 피해 구제가 훨씬 용이할 것으로 기대한다.

ㄱ씨는 강제절거당한 후 여성가족부 앞에 천막을 더욱 크게 치고 농성을 다시 시작했다. 그녀 옆에는 민주노총이 함께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투쟁을 지지하고 있다. 성희롱 가해자와 사용자, 원청회사에게 범규상 책임을 다하라는 그녀의 정당한 외침이 더 이상 외면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 글은 2011년 9월 공감 뉴스레터에 게재되었습니다>



장애인권



‘금융거래에서의 장애인차별사례조사 및 관련 법령개정연구’ 등 연구작업

공감은 ‘금융거래에서의 장애인차별사례조사 및 관련 법령개정연구’ 등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다양한 연구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신용카드발급, 보험계약 체결, 대출시 ‘본인의 자필서명’을 빌미로 하여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례가 빈번하였습니다. 금융거래에서의 장애인차별사례를 조사하고, 필요한 법령 개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보고서가 나온 이후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거래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외국사례연구’, ‘장애인 자립생활 개선방안 연구’, ‘정신질환자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연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모니터링 연구’ 등의 다양한 연구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리를 구제하는 활동을 합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자문과 소송지원 및 법률교육, 정신장애인 인권을 위한
 법·제도 개선활동 및 인권교육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차별없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입법무작위 헌법소원 제기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보장을 위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숨을 건 투쟁으로 지난 2007년 4월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및 장애 동료상담에 관한 시행규칙을 만들 입법무작위가 생겼는데도 4년 여간 이를 방치하고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공감에서는 중증장애인 당사자를 대리하여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관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청구를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후 복지부는 바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관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였고, 이어 시행규칙을 공포하였습니다.



중복장애를 가진 여성 노숙인 방화사건 변호하여 일부 무죄 판결

지적장애와 지체장애가 있는 여성 노숙인이 시내의 상점에서 구걸한 동전을 지폐로 바꾸어달라고 하였다가 모욕당한 후 분노를 참지 못해 방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감은 4건의 방화 혐의로 기소된 여성 노숙인을 변호하면서 법원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의 사법절차에서의 차별금지 조항을 근거로 형사재판에서의 의사소통 조력을 신청하여, 지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조력할 수 있는 사람이 인정신문부터 판결선고까지 재판의 전 과정을 피고인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지적장애를 가진 피고인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작성된 위법한 증거임을 주장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제1심 법원은 일부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법원이 최초로 지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을 한 사례라는 점에서, 그리고 장애인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진술거부권 고지가 행해지지 않은 채 작성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결의 선고로 수사기관이 장애인을 적법하게 수사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조력 등 정당한 편의제공 조치를 취하여야 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도가니> 열풍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



염형국 변호사

광주 인화학교 내 성폭행 문제를 다룬 영화 <도가니>가 우리 사회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학교 내에서, 시설 내에서 집단적으로, 상습적으로 벌어진 성폭력에 대해 끝내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소설 <도가니>의 작가 공지영은 그 상황을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그들의 가벼운 형량이 수화로 통역되는 순간 범정은 청각장애인들이 내는 알 수 없는 울부짖음으로 가득찼다”고 표현하고 있다.

2005년에 불거진 사건에 대해 경찰은 전면적인 재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하였고, 광주교육청은 특별감사반을 구성하여 인화학교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하였다. 사건이 벌어졌던 당시에 이처럼 철저한 수사와 감사가 진행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치권과 수사기관 그리고 관할교육청의 때늦은 호들갑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2005년 당시 13~14살된 청각장애 학생들에게 성폭력을 가했던 인화학교 교사들 2명에게 1심과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성추행 당시 학생들이 수화로 싫다고 표현했고, 몸을 비틀어 저항한다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성폭력특별법상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무죄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저항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면 무죄이고, 그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어야 유죄라는 법원의 판단은 과연 우리의 범감정에 부합하는 것인가? 이러한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된 ‘항거불능’ 문구는 성폭력특별법 6조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형법 제297호(강간) 또는 제298호(강제추행)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에 근거하고 있다.

원래 이 규정이 도입된 입법취지는 일반적인 강간죄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장애인들은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장애 자체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서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인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법원에서 ‘항거불능’ 상태를 좁게 해석하면서 원래 입법 취지와 상반되게 이 규정을 근거로 무죄판결을 내림으로써 오히려 성폭력특별법 조항이 장애인들에

대한 성폭력에 면죄부를 주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아이러니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문제는 수사 기관과 법원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부족, 장애인 성폭력 상황에 대한 이해의 결여에 기인하는 것이다. 몸을 비틀어 저항한다는 의사를 표시한다거나 혼자서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고 먹고 씻는 등 일상생활이 가능하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런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심신상실자에게만 항거불능을 인정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것은 법해석이라기보다는 궤변에 가깝다.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 최영희 의원 등이 항거불능 요건을 삭제하여 지난해 10월 제출한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에 대한 치유 및 보상, 법인 정상화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성폭력 제보자는 해고됐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은 가해자는 아직 학교에서 버젓이 일하고 있다. 외부로부터의 관리·감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자신들만의 성역을 이룩한 사회복지법인의 극단의 모습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은 막대한 공적 재원이 투입되고 있는 공적 영역이다.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에서의 비리와 인권침해 문제로 인해 대다수의 선량하고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자와 종사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적 통제장치 작동되어야 하고, 시설과 회계의 투명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입에서 “10년 이상 외출해본 적이 없다.”, “바로 아래에 있는 슈퍼에도 가본 적이 없다.”는 충격적인 진술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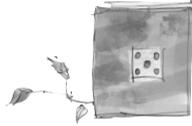
차제에 일부에서 벌어지는 사회복지법인에서의 비리와 인권침해 문제는 근원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서비스 이용자의 개별적인 상황과 욕구를 충분히 파악하여 개별적인 상황과 욕구에 부합된 개별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복지시설에서 거주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사회에 거주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이들을 위해서는 그에 맞는 주거지원 및 활동보조서비스, 취업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복지시설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오갈 데 없는 사람들로 버려두어서는 안된다. 또한 장애인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 끄적하고 시대착오적인 장애인 인권침해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역에 장애인 권리옹호를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영화 <도가니> 열풍은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정의롭지 못한 권력에 대한 분노에 크게 공감하였기 때문이다. <도가니> 열풍이 인화학교 자체에 대한 분노로 끝나지 말고 사회 곳곳에서 차별받고 인권침해 받고 있는 장애인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우리 사회에는 들리지 않게 울부짖고 있는 장애인들이 아직 너무 많다. 슬프다.

<이 글은 2011년 9월 공감 뉴스레터에 게재되었습니다>



이주·난민



이주노조 위원장 강제퇴거 헌법소원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5월 12일 공감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전 이주노조 위원장인 림부 토르너 등을 대리하여 강제퇴거명령 집행 행위 등에 관한 위헌 확인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림부 토르너 전 이주노조 위원장은 2008년 5월 2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 의해 긴급 보호되었고, 2008년 5월 15일 강제퇴거를 당했습니다. 이에 공감에서는 법무부장관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한 행정처분이 청구인들의 노동3권,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재판청구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임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공개변론을 통하여 이주노동자 역시 노동3권을 비롯한 여타 기본권의 주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환기하였습니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특히 출입국과 관련하여 단속·보호·강제퇴거 절차상의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과
 난민신청자들이 적절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심사를 받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주노동자 퇴직금청구소송 승소

체류기간에 관한 고용허가제법의 규정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본국으로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습니다. 이에 공감은 퇴직금을 받지 못한 이주노동자를 대리하여 퇴직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1일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출국은 자의가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한 형식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는 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1년 이상 계속 근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난민 신청 사건 변호사 대리 원칙을 강화한 다양한 활동

공감은 난민 인정 절차 중 법무부 심사단계의 중요성과 준수법적 기능에 주목하여 소송 대리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난민 신청자에 대한 지원을 법무부 심사 단계까지 확장하였습니다. 특히 2011년에는 신청 전 법률상담, 신청서 및 진술서 번역, 면담 동석, 참고자료 및 의견서 제출 등의 지원 활동을 벌였습니다. 또한 법무부의 난민 불인정 결정 후 이의신청 단계에서 난민인정협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난민 불인정 결정이 취소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난민 인정 요건은 매우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한국어가 서툴고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신청자들이 스스로 난민 신청을 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법무부 심사단계에서부터의 법률 지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감은 앞으로 관련 활동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밥이라도 제대로 먹자고 출근 거부한 것이 유죄인가

파업했다고 구속된 베트남 노동자들



장서연 변호사

인천신항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베트남 노동자 10명이 구속됐다. 죄명은 형법상 ‘업무방해’ 죄. 베트남 노동자 200여명이 2010년 7월 22일부터 7월 25일까지 나흘 동안, 그리고 2011년 1월 9일부터 1월 10일까지 이틀 동안 단 채로 출근을 거부한 일이 있었는데 한국 노동관계법에서 정한 쟁의행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업을 하였다는 이유다.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는 노동자들

구속된 베트남 노동자들은 ㄷ 건설산업에 고용되어 인천신항 컨테이너 하부축조 공사장에서 일했던 이주노동자들이다. ㄷ 건설산업은 2009년경 270억 규모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여명의 베트남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베트남 노동자들은 시급 4110원의 최저임금을 받고 2조 2교대로 매일 12시간 씩 일해야 했다. 주간 근무조는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야간 근무조는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했고 일 이 많은 날은 연장근로를 하기도 했다. 공사가 시작되면 중지할 수 없는 작업의 특성상 토요일, 일요일에도 공사는 진행이 되었고 노동자들은 휴일근로수당을 받기 위하여 자의반타의반으로 일해야 했다. 구속된 노동자는 한국에 입국하여 처음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 자신이 “사람이 아니고 노예나 기계 같은 느낌” 이 들었다고 한다.

파업은 2010년 7월 22일 아침에 일어났다. 야간 근무조가 근무를 마치고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회사 관리자들이 노동자들에게 다가와 아침 식사 시간인 7시를 지키지 않고 일찍 근무를 마쳤다면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건설 현장의 특성상 30미터 높이에서 일을 하다가 식사를 하려면 이동시간과 대기시간이 길다. 당시 베트남 노동자들은 5분이라도 일찍 내려오면 사측에서 노동자들의 번호(회사는 노동자들을 이름 대신에 회사가 부여한 번호로 식별하고, 근무복에 번호를 적어 놓았다)를 적고 불이익 조치로서 임금을 공제하거나 건설현장의 통로를 막는 등 엄격하게 노동자들을 통제하여 노동자들의 불만이 컸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당시 주간 근무조까지 출근을 거부하고 베트남 노동자 전체 200여명이 회사 측에 식사시간 문제, 최저임금에서 식비(매일 24만원)를 공제하는 문제, 기숙사 안에서의 엄격한 관리감독 문제 등의 개선을 요구 하며 나흘 동안 출근을 거부하였다. 나흘의 기간 중 7월 24, 25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이었다. 당시 파업이 조직적 이거나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회사 측의 회유와 해고 협박으로 나흘 만에 노동자들은 자연 스럽게 다시 출근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회사 측에서는 파업 이후 일부 개선 내용으로 노동자들이 식사시간 10분

전에 식당으로 내려올 수 있게 하고, 일정한 작업성과를 달성하는 조건으로 식비를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이후 실제로 약속이 지켜지지는 않았다.

불법폭력파업으로 몰고 가는 검찰

경찰과 검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파업이 아닌 불법폭력파업으로 규정했다. 구속된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파업을 주동하고, 출근을 원하는 대부분의 베트남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폭행하여 출근을 저지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속된 노동자들 대부분은 2010년 7월 이후 ㄹ 건설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1차 파업 당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체 파업 상황을 파악하고 주도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회사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노동자들과 사전 협의나 협상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하는 식이었기 때문에 베트남 노동자들은 불만이 많이 쌓여있었다. 이런 전후 사정을 보면 구속된 10여명 노동자들의 협박에 의하여 200여명의 노동자들이 출근을 못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한편 이 사건의 수사 과정도 문제가 많았다. 구속할 만큼 중한 사안도 아니고,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닌 등록 이주노동자들로서 기속사와 근무처가 일정하여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소환 요구 한 차례 없이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10명 전원에 대하여 바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구속시켰다.

노동자들의 파업은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의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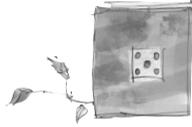
헌법 제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단체행동권에 대한 어떠한 법률유보조항도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단체행동권의 핵심인 쟁의행위는 고용주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으로 형사처벌 하는 것은 사실상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정부는 이미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로부터 단순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에 대하여 2000년 이래 총 10차례 권고를 받았고 국제노동기구의 2004년 세계 보고서(Global Report)는 한국을 선진국 중에서 노동 분쟁을 범죄시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소개하면서 한국을 노동권에 대한 침해 문제가 “심각하고 급박한(serious and urgent)”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이주노동자들이 단체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구속된 최초의 사건이다. 노동자들의 파업을 형사 처벌하는 유일한 국가, 한국. 경찰은 단속 실적을 위하여 사건을 부풀려 노동자들을 구속시키고 회사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단체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본보기’를 보여주겠다. 과연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단체로 출근을 거부한 것이 유죄인가?

〈이 글은 2011년 7월 공감 뉴스레터에 '이주노동자들의 파업이 유죄인가?' 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습니다〉



빈곤·복지



입양특례법 개정



1970년대 해외 입양된 이들이 성인이 되어 한국을 찾았습니다. 뿌리를 찾기 위해 입양기관을 방문했지만,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오기 일쑤였고, 어렵게 손에 넣은 입양기록에는 본인의 생년월일, 건강상태, 입양국가 등이 잘못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입양인들은 법과 절차를 무시한 입양기관의 입양 행태에 분노했습니다. 문제의식을 지닌 입양인들과 공감은 2008년 8월에 만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 운동을 시작했고, 약 3년만인 2011년 6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법률 명칭을 「입양특례법」으로 변경하고, 국내 입양 우

선 추진 후 국외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입양숙려제와 가정법원에 의한 입양허가제의 도입, 입양인의 정보접근 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홈리스, 도시빈민 등 빈곤계층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법·제도 개선연구를 합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옹호 및 권익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공익단체에
 법률지원, 법률교육 및 사회복지시설의 인권문제에 관한 상담, 실태조사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한국철도공사는 2011년 7월 「노숙인 강제퇴거 방침」(이후 서울역사 내 야간 노숙행위 금지 방침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을 발표하고 8월 22일부터 서울역 부근의 거리 홈리스들이 야간에 서울역사 내에 머무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공감은 서울역 방침이 거리 홈리스에 대한 차별이며 인권 침해라고 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인권사회단체들이 꾸린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방침 철회/공공역사 홈리스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권위 진정 대리, 토론회, 1인 시위 등의 공동대책위원회의 연대활동을 해 온지 반 년이 지난 지금까지 서울역의 야간노숙행위 금지방침은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공감은 공공역사 부근의 거리 홈리스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맞서 인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계속 함께 할 것입니다.



수급권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



차혜령 변호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에 대해 최종적인 사회안전망 기능을 하는 공공부조법이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겠다고 법은 밝히고 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최소한 최저생계비의 소득은 보장하자는 것이다. 최저생계비는 빈곤을 가리는 빈곤선이면서 동시에 급여의 기준선이 된다.

이러한 법의 취지를 따르자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수급권자가 되려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하나는 개별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것이라는 요건이고, 다른 하나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한 요건이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라도,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가족이 우선 책임을 지고, 가족이 책임질 수 없을 때에만 국가가 기초생활급여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양의무자 기준은 낮은 최저생계비 기준과 더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를 가리는 기준이 비현실적으로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다고 보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기준은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130%를 적용하고 있다. 1인 가구 수급신청자에게 1인의 부양의무자 가구가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가족을 온전히 부양할 수 있다고 보는 꼴이다. 또한 이 부양의무자 기준은 '간주부양비'라는 또 다른 문제도 파생시키고 있다.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지는 않지만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별도로 산정하여 일정한 금액을 부양비로 산정하고, 산정된 부양비가 실제로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양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그 금액만큼 생계급여를 감액한다. 실제로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지만 부양을 받는 것으로 간주되어 그만큼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한편, 행정적인 문제도 있다. 법령상으로는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경우 수급권자로 선정될 수 있고 이를 판별하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과 처리절차는 수급신청을 받는 행

정청마다 편차가 있다. 삼십삼년 전에 헤어져 왕래가 전혀 없는 자녀의 부양능력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수급신청한 사람에게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보고되기도 한다.

수급권자 선정 시의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의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 빈곤층에 속하나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즉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는 2009년 기획재정부 자료 기준으로 약 410만 명, 전 인구의 약 8.4%에 이른다. 이 중 비수급 빈곤층 중 약 103만 명(60만 가구)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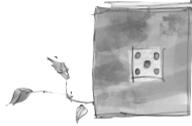
2010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신청 후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가구에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이유를 물었을 때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보다 많기 때문’이라는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64.13%를 차지하고 있다. 2009년 분석 자료에서는 58.3%였던 비율이 더 높아졌다. 보건사회연구원이 2009년 2월부터 12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 2,796가구, 제도 밖 비수급 빈곤층 7,417가구 복지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기초보장급여 신청자 중 74.2%가 소득기준은 충족하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하였다. 조사기관이나 시점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되지 못한 비율은 과반수를 훨씬 상회한다.

이와 같은 빈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수급권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다.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소속정당을 막론하고(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민주노동당 박정숙 의원, 민주당 최영희 의원, 민주당 이낙연 의원, 민주당 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제출되어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예산 문제 때문에 기준 폐지가 곤란하다는 입장이고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심의는 또다시 다음 회기로 연기되었다는 소식이다. 국회와 정부는 ‘가난은 가족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라는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야 한다.

〈이 글은 2011년 4월 공감 뉴스레터에 게재되었습니다〉



국제 인권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내의 상황을 국내외로 알리기 위한 연대 활동



2010년 6월 한국을 공식 방문한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Frank LaRue)는 2011년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한국의 의사표현의 자유의 보장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 보고서에서 특별보고관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 법규에 근거하여 사법 조치하는 등 개인의 의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늘어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히며 형사상 명예훼손죄의 삭제 등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여러 조치들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공감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보고서 내용과 특별보고관의 권고 사항들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국내외 제네바 현지에서 기자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민단체들은 보고서 내용과 특별보고관의 권고 사항들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국내외 제네바 현지에서 기자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국내 인권상황과 관련된 국제인권법 및 외국법 연구조사, 유엔인권시스템의 활용, 국제적인 공익변호사 네트워크의 강화 및 공동활동, 국제적 인권문제에 대한 직·간접적인 개입 등의 활동을 합니다. 특히 실천적인 연구조사와 관련 네트워킹을 통해 다양한 단체들과 함께 활동하고 국내·외적 인권상황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노력합니다.

국내 기업의 해외자원 개발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례 관련 연대 활동

국제 거래의 증가와 다국적 기업의 성장으로 기업들이 개인의 삶과 인권에 미치는 영향력은 커지고 있으며 그와 같은 영향은 그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국제사회에서 기업들의 인권 존중 의무가 점점 강조되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과 ISO 26000 등은 기업들이 활동의 근거지로 삼은 사회에 속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와 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면서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침해 사례 또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에 공감은 국제민주연대, 좋은기업센터 등의 국내 시민단체 및 현지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례에 관한 조사, 기업 면담 등의 활동을 하였으며 2011년 12월, 위 단체들과 공동으로 '해외자원개발, 문제와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법에 의해 가려지는 인권



박영아 변호사

경제적 이익과 인권을 한 저울에 놓고 비교했을 때 당연히 인권이 놓인 쪽이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경제적 이익이 ‘공익사업’으로 포장되어 인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인권 침해가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고 한국기업이 그 가해자 또는 피해자라면?

특히 자원개발사업의 경우 대립각은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현지 주민들의 인권은 막대한 이익 앞에서 급속히 빛을 잃는다. 이익은 모두에게 돌아간다고 하지만, 현지 주민들의 의사는 크게 고려되지 않는다. 단지 보상금을 던져주고 이만한 현금을 만져본 적이 없을 터이니 만족할 것이라고 추측할 뿐이다.

그런데 국내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제철회사가 인도에서 철광 개발과 대규모 제철소 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쳐 6년 가까이 사업을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는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삶의 터전과 생계수단을 잃는 주민들에게는 개발 사업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하는 재앙이다.

그러나 해당 제철회사는 인도 정부에서 관련 법률에 따른 승인을 모두 내어 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과연 그럴까. 현지 주민들은 대대로 주변의 자연환경에 의존해 작물을 키우고 어업에 종사하며 지속 가능한 생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제철소 건립으로 이들은 살던 곳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삼림과 해안이 파괴되면서 생계수단도 잃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제철소 건립으로 일자리가 생긴다 해도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배달, 청소 등의 일용직 노동뿐이어서 인도 중산층 정도의 현재 생활수준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며 이는 아이들의 미래까지 위협하고 있다.

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인권이 오히려 법을 집행하는 정부 또는 법 그 자체에 의해 가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생계수단의 박탈은 분명 인권에 대한 침해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1조는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 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the right ...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for himself and his family, including adequate food, clothing and housing, and to the continuous improvement of living conditions)”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유엔경제이사회는 적당한 식량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adequate food)에 관한 일반논평 12 제6항에서 “적당한 식량에 대한 권리는 모든 남자, 여자와 아동들이 홀로 또는 타인과 함께하는 공동체 내에서 적당한 식량 또는 그와 같은 식량을 구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 상시적으로 물리적 및 경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때에 실현된다. 따라서 식량에 대한 권리는 그것을 칼로리, 단백질과 기타 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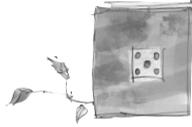
정 영양소로 구성된 최소한의 꾸러미와 동일시하는 협소하거나 제한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적당한 식량에 대한 권리는 진보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The right to adequate food is realized when every man, woman and child, alone or in community with others, has physical and economic access at all times to adequate food or means for its procurement. The right to adequate food shall therefore not be interpreted in a narrow or restrictive sense which equates it with a minimum package of calories, proteins and other specific nutrients. The right to adequate food will have to be realized progressively)”고 명확히 밝히고 있으며, 적당한 주거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adequate housing)에 관한 일반논평 4 제8항에서 “강제퇴거는 협약의 요건과 조화될 수 없음이 분명하며 가장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리고 국제법의 관련 원칙에 따라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instances of forced eviction are prima facie incompatibl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venant and can only be justified in the most exceptional circumstances, an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국제협약이나 헌법 등에 규정된 인권규범의 일차적 수범자는 국가다. 다시 말해서 국가가 만든 법제도나 그 집행방식이 인권 침해를 허용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권 침해를 가져오는 행위를 한 직접적 원인 제공자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원인 제공자가 경우에 따라 국가의 정책까지 좌우할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는 다국적 기업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한국을 포함한 OECD 회원국들이 의결한 ‘다국적 기업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위와 같은 영향력에 주목하여 기업들의 인권 존중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들이 지켜야 하는 주의의무(due diligence)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제철소 건립에 반대하고 있는 현지 주민들의 인권과 철광개발과 제철소 건립으로 인해 제철회사, 인도 정부와 어찌면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한 저울에 놓고 비교했을 때 저울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까?



취약계층노동



가사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2011년 6월 국제노동기구는 '가사노동자를 위한 권찰은 일 자리 협약(THE CONVENTION CONCERNING DECENT WORK FOR DOMESTIC WORKERS)과 권고 (THE RECOMMENDATION CONCERNING DECENT WORK FOR DOMESTIC WORKERS)' 를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국가들이 가사노동자를 노동자로 보고 이들의 노동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가사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에서 가사노동자의 노동조건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발제하고 돌봄연대에서 주관하는 가사노동자에 관한 정책 개선 논의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가사사용인의 법적 보호 방안' 이라는 주제로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주한 공동 프로젝트 보고서를 함께 집필하였으며 관련 기고나 성명서도 발표하였습니다.



법·제도 개선활동, 소송 및 자문, 연구조사, 교육 등을 통해 소외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주노동자, 청소년노동자, 여성노동자, 비정규직/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활동합니다.

청소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

청소노동자는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간접고용 형태로 일을 하기 때문에 실 공간도 인
 간적인 대우도 보장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감은 청소노동자의 노동권
 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청소노동자를 위한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캠페인단에 참여하여 국가계약법 개정 등 청소노동자의 노동권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흥대 청소노동자를 대리하
 여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며, 은마아파트에서 일을 하다 감전사를 당한
 청소노동자의 유가족을 대리하여 형사사건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예
 이즈 감염 주사 바늘에 찔린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를 위해 공동대책위원회
 에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사납금 제도를 거부한 택시기사들 대리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당해고재심결정취소소송 수행

그동안 사납금 제도는 탈세 및 택시기사 노동 착취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은 사납금 제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회사는 이윤 창출을 위하여 택시기사들에게 사납금
 제도를 강요하고 있으며 사납금 제도는 뿌리 깊은 관행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감은 택시기사들의 노동권
 을 보호하고 사납금 제도를 뿌리 뽑고자 사납금 제도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로부터 불이익한 조치를 받고
 결국 부당해고까지 당한 택시기사들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당해고재심결정취소소송 등 여러 건의 소송
 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윤지영 변호사

요양보호사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요양보호사는 노인을 돌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제도에 따라서 심사를 통과한 노인들은 일정액만 지급하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목욕도 시켜 드리고 식사도 준비해 드리는 것이지요. 영화 '시'에서 윤정희의 직업이 바로 요양보호사지요.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노인요양원이라는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요양보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3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3년 만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 백만 명이 넘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친구, 혹은 옆집 아주머니 중에 한 분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한번 둘러보세요.

이렇게 요양보호사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데에는 법과 제도에 그 원인이 있어요. 정부는 단시간 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하여, 요양보호사의 숫자를 늘리고 신고만 하면 요양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어요. 요양보호사의 과잉 공급과 요양기관의 난립은 요양기관 간의 과당, 출혈 경쟁을 낳았어요. 그리고 경쟁을 위한 비용 절감의 책임은 고스란히 요양보호사의 몫으로 남았지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노인들도 한 달에 십여만 원을 내야 하는데, 요양기관은 노인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인들에게 공짜로 급여를 제공하겠다고 설득하지요. 그러면서 노인들이 부담해야 할 돈을 요양보호사가 대신 부담하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요양보호사는 한 달에 80여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으며 살아가요. 이마저도 노인들의 드나듦에 따라 매월 변동하고요. 또한 대부분의 요양보호사가 중고령 여성들인데요. 사실 이들이 하는 일은 신체를 많이 쓰는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몸이 불편한 노인을 씻기고 수발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다 보니 요양보호사의 30% 이상이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어요. 산재 처리를 할라치면 공단에서는 나이 들면 원래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라고 둘러대지요. 몸뿐만 아니에요. 요양보호사는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노인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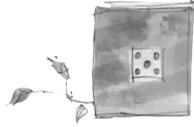
그 가족은 요양보호사를 가사사용인으로 취급해요. 할 필요가 없는 온갖 집안일까지 요양보호사가 떠맡아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일을 안하면 '고객'이 사라지니 안하러야 안할 수가 없는 거고요. 집안에서 노인과 단 둘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요양보호사는 성희롱, 성폭력에도 무방비로 노출돼요. 결과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보호사들의 희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도 정부는 눈 감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상승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공감은 요양보호사협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여성단체들 및 이 분야에 전문가인 교수, 연구원 등과 함께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을 만들어서 입법 청원을 했어요. 참고로 일본의 사정도 우리와 비슷한데요. 일본에서도 「개호노동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을 두고 있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열악해진 데에는 본질적으로 사회보험제도인 이 제도가 시장의 원리에 따라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은 궁극적으로 서비스의 질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면개정안」도 만들어서 입법 청원을 했어요.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게요.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바래요.

〈이 글은 2011년 11월 공감 뉴스레터에 게재되었습니다〉



성소수자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성소수자 공동행동 활동



서울시민 9만 7천 명이 주민발의한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이, 호모포비아와 반인권세력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에 진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 '성적 지향', 소수자보호조항에서 '성소수자'를 삭제하려고 하였습니다. 공감은 LGBT 인권단체들과 함께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을 결성하여, 학교 내 청소년 성소수자 차별사례집을 발간하고,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서울시의회회관 점거시위를 하면서, 의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고, 여론화를 위한 언론기고, 국제연대조직 등 다양한

활동 끝에 마침내 2011년12월19일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공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실제로 모든 학교가 인권과 소수자에 친화적인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후속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몰이해, 뿌리 깊은 편견과 일상적인 차별로 인하여
 성소수자들은 여전히 자신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이며, 법제도의 시각지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공감은 <성전환자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례법> 입법 운동, <차별금지법> 제정운동, 균형법 제92조
 위헌제정사건 공개 변론 등 성소수자 인권운동단체들과 함께 성소수자와 관련한 법제개선 및
 일상에서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및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금시설과 트랜스젠더 인권’ 토론회 주최

공감은 교도소에서 자살시도를 한 트랜스젠더 국가배상사건을 계기로 구금시설에 있는 트랜스젠더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위하여, ‘구금시설과 트랜스젠더 인권’ 이란 주제로 인권단체들과 함께 토론회를 공동주최하였습니다. 그동안 성별이 ‘남성’ 과 ‘여성’ 으로서만 확고하게 구분된 구금시설에서 트랜스젠더들은 수용자의 배치 문제에서부터 의복 문제, 의료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현황이나 실태파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트랜스젠더 수용자의 인권을 헌법적 관점, 의료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외국의 정책사례를 연구조사하였습니다.



(가)SOGI(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법연구회 활동

공감은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과 관련한 법제도 연구, 성소수자 인권 신장을 위한 기획소송 등을 추진하기 위한 법률가, 활동가, 연구자들로 구성된 (가)SOGI법연구회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일본 타카오카 법과대학의 타니구치 히로유키 교수를 초청하여 ‘일본 LGBTI 관련 법제도와 사회적 현황’ 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10월에는 ‘East Asian Law and Society Conference 2011’ 에서 LGBT 인권 세션을 구성기획하여, 장서연 변호사가 ‘동아시아지역 LGBT 공익소송 사례’ 를 연구, 발표하였습니다.

성소수자들, 혐오에 맞서 자긍심으로 서울시의회를 뒤엎다



장서연 변호사

2011년 12월 16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안」을 찬성하는 의원들이 수정동의안을 작성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주민발의 원안에 있던 소수자학생 권리보장 조항에서 '성소수자 학생' 만 삭제되었다. 이에 대해 내가 항의하자, 한 의원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성소수자가 들어가면 조례가 통과를 못한다. 조례가 보류되거나 부결돼도 괜찮냐.”

그 의원의 말은 현실적인 판단이었다. 당시 서울시 교육위원들은 매일 400-500통의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한다는 동성애혐오 문자와 협박 전화에 시달리고 있었다. 더구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안」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 되지 못한다면, 2012년 총선 정국 때문에 사실상 제정이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동성애자는 정신병자' 라는 노골적인 혐오의 말들보다, 진보입법에서조차 성소수자의 존재를 걸림돌로 여기게 된 상황이 비수가 되어, 울컥 눈물이 나고 말았다.

학생인권조례 반대단체, 성소수자 혐오를 악의적으로 조장하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안」은 서울시민들이 주민 발의한 조례안이었다. 앞서 제정된 광주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다른 점이다. 청소년활동을 포함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에서 2010년 7월부터 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여, 주민발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필사적으로 총 97,702명의 유효서명을 확보하여 주민발의 청구한 조례안이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는 친환경 무상급식과 더불어, 진보교육의 핵심적인 의제이자 공약이었다. 하지만, 보수단체와 보수성향의 주류언론들은 터무니없는 이유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고, 성소수자 혐오를 악의적으로 조장하였다. 서울시 교육청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과정과 광노현 교육감의 선거법위반 사건을 겪으며 정치적 부담을 느꼈고, '동성애 논란'을 회피하려고 초안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였다. 주민 발의로 상정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안도 서울시의회 교육위 상임위 통과에도 난항을 겪으며, 원안의 내용이 삭제되거나 단서조항이 추가되는 등 대폭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차별받는 특정 소수자집단의 청소년을 배제한 '정치적' 결정은 학생 '인권' 조례의 의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이라는 연대 네트워크가 긴급하게 결성이 되었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전화나 이메일,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항의 의견을 표시했다. 성소수자 활동가들은 만약 「서울시학생인권조례안」의 차별금지조항이 폭력적인 성소수자혐오 주장 때문에 수정된다면, 앞으로 있을 모든 차별금지입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우려했다.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활동가들은 여러 고민 끝에, 이러한 절박함을 드러

내고 정면으로 맞서 싸우자고 결의했다.

성소수자들, 서울시의회를 점거하다

2011년 12월 14일, 성소수자들과 그 지지자들은 서울특별시의회별관을 점거하고 시위에 돌입하였다. 한국 성소수자 운동 역사에서 성소수자들이 입법기관을 점거하고 시위에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청소년을 포함한 많은 성소수자들이 농성장을 지키러 모여들었고, 많은 단체들이 지방방문과 지지성명을 내고 연대의 손을 내밀었다. 점거시위를 시작하고 가까이서 보니, 서울시의회의 내부 상황은 훨씬 심각했다.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한다는 의원들의 인권의식은 천박한 수준이었다. 성소수자 공동행동 활동가들은, 2007년 차별금지법 이후 쌓아온 운동의 성과와 자원들을 농성기간 동안 압축적으로 최대한 활용하였다. 외국의 주요 성소수자 인권단체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반인권적인 상황을 알리고, 국제연대를 조직하였다. 유엔 산하의 국제인권조약기구인 아동권리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사회권위원회 등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성적지향'을 명시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들을 인용한 의견서를 만들어 의원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2007년 차별금지법 사태이후 NGO 단체들이 국제 활동을 통해 얻은 내용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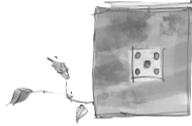
학생인권조례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다!

성소수자들의 적극적 활동으로, 논란이 되었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조항이 주민발의 원안대로 서울시의회를 통과하였다. 농성장에서 모니터를 통해 본회의 회의과정을 조마조마하게 지켜 보던 사람들은, 학생인권조례 찬반토론과정을 감명 깊게 지켜봤다. 특히, 김형태 교육의원은, "기독교인인 한 사람으로서 저는 그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지금 살아 계시다면 과연 그분이 성소수자들을 차별하라고 하실까,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라고 하실까. 적어도 제가 믿고 제가 아는 예수님은 분명히 그분까지도, 그들까지도 존중하고 배려할 것으로 믿습니다."라고 성소수자 인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또한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차별을, 특별히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거부합니다. 문화적인 태도와 보편 인권이 대립할 때는 보편적 인권이 반드시 우선되어야 합니다."라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메시지를 인용하며 찬성토론을 마쳤다.

한국 역사에서 입법기관에서 성소수자 청소년의 인권이 쟁점이 되어 공식적으로 논의가 된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고, 입법자들이 성소수자 인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의견을 피력하는 것도 처음이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안」은 표결결과, 재석 86명 중 찬성 54명, 반대 28명, 기권 4명으로 서울시의회에서 가결이 되었다. 그 순간 농성장에 있던 성소수자들과 그 지지자들은 환호를 지르고, 서로 부둥켜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성소수자들에게 이번 서울시의회 점거시위는, 한국사회에서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성소수자혐오와 폭력에 저항하기 위한 절박한 투쟁이었다. 특히 고립된 상태에서 홀로 고통을 견디고 있는 성소수자 청소년들을 위한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었다. 반인권단체들의 악의적인 성소수자 혐오에 맞서, 성소수자들의 적극적 행동과 자긍심으로 서울시의회를 뒤엎는 순간이었다.



공익법일반



10회 아시아·태평양 에이즈 국제학술대회(ICAAP) 참가 및 외국인 강제 검진 관련 발표

2011년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부산에서 열린 '제10회 아시아·태평양 에이즈 대회(International Congress on AIDS in Asia-Pacific: ICAAP)'에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유엔에이즈(UNAIDS)와 아시아·태평양 에이즈 학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이 국제학술대회는 에이즈 관련 학자들과 성소수자(LGBT), 성노동자, 이주민, 청소년, 빈곤계층 그룹 등의 당사 단체와 NGO들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함께 모여 진행하는 학술대회입니다. 장서연 변호사는 이 대회에서 외국인 강제 검진의 문제점에 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공감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 HIV 감염인 등 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과 법제개선운동, 공익제보자의 보호 및 지원활동, 해외 한국 기업 감시활동 등 우리사회의 변화를 위한 다양한 실천들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법하게 지급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 환수를 위한 주민소송 대리

공감은 2008년 서울의 세 개 자치구 주민들을 대리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위법한 의정비 조례에 따라 구의회 의원들에게 지급한 의정비를 환수하기 위한 주민소송을 제기한 이래 2011년에도 계속하여 주민소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공감은 주민소송이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낭비를 감시하는 좋은 수단이 되며, 의정비 환수 주민소송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소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 제1심에서 모두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 수억 원에 달하는 지방재정 손실분을 환수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으나, 그 후 피고 지방자치단체장의 항소로 진행된 제2심에서는 자치구별로 주민인 원고의 승패가 엇갈린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재 모든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되고 있으며, 5년간 이어온 지역주민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가 올바른 판단을 받기를 바랍니다.



탈북자 국가배상청구소송

북한이탈주민, 소위 탈북자가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거치는 곳이 대성공사입니다. 탈북자는 이곳에서 보호 및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보호는 방기한 채 신원을 파악하는 조사에만 주력합니다.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는데 탈북자 A도 그 피해자입니다. 탈북자 A는 대성공사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맹장염에 걸렸으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모욕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에 공감에서는 탈북자 A를 대리해서 국가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 원리로서의 인권 : '권리장전' 으로 헌법을 읽자



정정훈 변호사

인권은 대항적 실천의 운동이자 중첩적 합의가 존재하는 공동체의 가치질서라는 지평을 달리하는 두 측면이 존재한다. 대항적 실천 운동으로서의 인권을 '인권의 정치' 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가치질서로서의 인권은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 원리' 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대항적 실천으로서의 인권은 그야말로 눈부신 진전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그 실천에 비하면, 인권의 가치를 사회적·정치적 구성 원리로 뿌리내리려는 노력은 아직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가령 인권의 비판은 여전히 외재적이다. 법치에 대하여, 민주주의에 대하여 인권은 외부자적 개입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그 외부자적 위치로 인하여 인권은 구성원리가 아닌, 사후적 교정(비판)원리에 머무르고 있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원리로서의 인권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내부로 들어가, 동등한 구성 원리로서, 그 내용으로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다시 구성하는 '내재적 비판' 을 수행하고, 내재적 긴장과 갈등을 창출하며, '내재적 상상력' 을 수혈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구성 원리로서 인권을 확립하는 것은 정치공동체의 근본에 인권이 놓여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 과정은 '헌법' 을 인권의 문서로 새롭게 독해하는 실천이다. 시민혁명의 경험이 없는 역사적 특수성 때문에 우리에게 헌법은 '권리장전' 이라는 성취의 문서가 아니라 해방 공간에서 정치적 세력 사이의 합의의 문서로 주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그 발생적 맥락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헌법은 여전히 항상 새롭게 읽어야 할 '개신의 역사를 담은 중층적 텍스트' 다. 또한 그 제정 과정에서의 한계가 헌법의 새로운 독해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흔히 기본권이라고 불리는 인권의 목록과 국가권력을 구성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이 그것이다. 헌법에 대한 고전적 독해는 두 요소의 적극적 연관을 읽어내지 않았다. 권력기관 구성 규정 따로, 기본권(인권) 규정 따로 읽는 방식의 독해는, 기본권 규정을 국가 권력으로부터 침해받지 않을 권리 정도로 인식하는 자유권 중심의 문서로 읽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독해는 헌법 제1조와 '권리장전' 으로서의 기본권 규정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담아내지 못한다. '권리장전' (인권) 중심으로 헌법을 다시 읽어야 하고, 그렇게 읽는 방식을 통해서 헌법 제1조의 주권과 인권의 내적 연관을 밝혀낼 수 있다. 새로운 독해의 내용은, 국가권력은 인권(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원리는 정부, 국회, 법원 등 국가기구를 구성하는 규정에서도 원리적으로 관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독해를 통해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의 역할을 새롭게 규정하고 각 국가기구들의 구성과 작용 방식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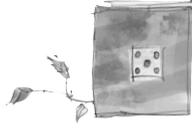
이러한 헌법 독해는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 원리' 로서 인권을 확립하는 출발점이고, '인권의 대전환' 의 근거를 놓는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독해에 기초할 때 헌법은 인권의 정치가 수렴되고 제약되는 최종심급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인권의 상상력이 뿌리내리는 열린 텃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권 공화국(국가)' 이라는 형태의 인권과 국가의 결합은 인권을 억압하는 주체로서의 '국가' 와 억압적 국가에 저항하는 실천으로서의 '인권' 이라는 공존할 수 없는 두 개의 머리를 지닌 괴물을 만들어 낼 것인가? 아니면 N극과 S극이 한 몸체에 구현된 나침반이 '떨림' 을 통해 방향을 제시하듯이 '인권' 과 '국가' 라는 이질적 결합이 불완전하게나마 균형을 잡아 공동체적 가치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도, 인권 중심으로 헌법을 다시 읽고, 다시 실천하는 활동을 통해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 원리' 로서 인권을 확립할 수 있을 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믿는다.



이 글은 2012년 1월 월간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에 게재된 '인권의 정치에 대한 단상(斷想)' 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였습니다.

공익법교육·중개



공감은 법조인, 예비법조인, 학생 등의 참여할 수 있는 공익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중개하고,
 공익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공익법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학생, 예비법조인을 대상으로 인턴십 제도와 인권법 캠프 등을 진행하며, 로펌이나 법조인이 공감의 활동에
 재정지원 또는 직접 참여하도록 하거나 공익단체를 중개하여 공익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합니다.

공감 인턴십 제도

공감은 매년 2회 정기 인턴을 선발하고 비정기적으로 수시 인턴을 선발하여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2005년 제1기 인턴부터 2011년 제14기 인턴까지 300여 명의 인턴들이 공감과 함께하였습니다. 공감 정시 인턴은 국내·외 법률 문헌조사, 홍보, 운영의 4개 영역으로 선발되어 6개월 간 200시간 이상 담당 구성원의 지도 하에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원 활동을 통해 재능을 기부하는 그들의 노력과 땀은 공감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공감 인턴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권의 지평을 보았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였습니다

공감에서 분노하는 법, 이피하는 법 그리고 공감하는 법을 배우고 갑니다”



공감 제13기 인턴: 강정용, 김건, 김민욱, 김수진, 김우중, 김현경, 나꽃샘, 박세용, 박지현, 박형수, 양길모, 양해인, 여동근, 이소연, 이수정, 이승민, 이은혜, 이종희, 이현수, 임수진, 장유진, 정승욱, 정한나, 최민영, 최유진

공감 제14기 인턴: 강성대, 김남익, 김복원, 김민섭, 김정환, 남공술, 남효영, 박다혜, 배민신, 변수양, 안예하, 오예슬, 우람, 원보라, 이기연, 이성준, 이인환, 임유경, 정원진, 황재환

수시 인턴: Jason Lau, 김현호, 김동희, 주기영

공감 펠로우십 제도

공감은 국내외 변호사, 학자, 활동가 등 전문가들이 인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펠로우십(객원연구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소 3개월 이상, 최대 1년의 기간동안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펠로우들은 안정적이고 직접적으로 공감에 결합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김정혜 펠로우(2010년 7월~2011년 6월), 조혜인 펠로우(2011년 2월~2012년 1월)가 공감에서 함께 활동하였습니다.

공감 인권법 캠프

공감은 매년 예비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공감 인권법 캠프를 개최하여 공익 인권법에 관심 있는 예비 법조인들이 공익법 활동에 대해 고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왔습니다.

2011년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3일간 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제4회 공감 인권법 캠프에는 예비 법조인 100명이 참여하여 서로의 인권 감수성을 나누고 키웠습니다.



로스쿨 실무수습

공감은 국내 로스쿨 10곳, 호주 로스쿨 1곳과 실무수습협약을 체결하여 방학 중 해당학교 로스쿨생들을 대상으로 실무수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도 동계 실무수습(1/17~1/28)에 12명이, 하계실무수습(7/11~7/22)에 1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공감 월례포럼

공감에서는 매월 인턴들이 준비하고 진행하는 월례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1년 8회의 월례포럼이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주제를 함께 바라보고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 1월 : 주거인권 실천이야기(집=복지?) _ 한국도시연구소 서종균 연구원
- 4월 : 한국 빈곤의 현실과 반빈곤운동 _ 빈곤사회연대 최예륜 사무국장
- 5월 : 노동자 없는 현실을 말하다 _ 노동과 꿈 하종강 대표
- 6월 : 영화 <종로의 기적> 관람 및 감독과의 만남 _ 이희상 감독, 출연배우
- 7월 : 학생인권을 말하다 _ 건국대 법학과 한상희 교수
- 10월 : 녹색정치, 왜 필요한가 _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하승수 변호사
- 11월 : 모두가 행복한 대안 개발과 마을 공동체 _ 장수마을 대안개발연구회 박학룡 대표
- 12월 : 사람과 법의 힘으로 인권과 환경을 지킨다 _ Earth Rights International 소속 변호사 Paul Donowitz

공감 펠로우를 마치며



조혜인 변호사

‘공감의 펠로우 변호사’라는 이름을 달고 활동한지 만 1년이 된 2012년 1월, 펠로우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펠로우 변호사’가 무엇이나는 물음에 공감이 인큐베이팅하고 있는 새내기 공익변호사라고 답해왔다. 이제 공감이 라는 인큐베이터 밖으로 발을 디디며 안국동 사무실에서 공감 사람들과 함께 부대껴온 한 해를 돌아본다.

공감과의 인연은 2010년 사법연수생이었던 시절, 변호사 실무수습을 공감에 신청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나는 본질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법이라는 도구에 대해 회의하며 진로를 고민하고 있었다. 그런 나에게 공감은, 변호사가 반드시 ‘법’의 대변인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법 안에서는 법의 틈새에 스며들어 있는 소수자의 목소리를 읽어내고 또 법 밖에서 법에 대해 끊임없이 물음을 던지면서 법이 아닌 ‘사람’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눈앞에서 보여주었다. 공감이 보여준 가능성 앞에서 나는 명쾌하게 공익인권법분야에서 일하겠다고 결심할 수 있었다. 마음을 가장 결정적으로 울린 것은 어쩌면 공감 구성원들의 맑고 환한 표정이었는지도 모른다. 무슨 일이든 직업삼아 하다보면 생활의 피로함이 묻어나기 마련인데 나는 그제껏 만난 어느 법조인보다 밝은 표정들을 공감에서 볼 수 있었고, 그 표정만으로도 이들은 자신의 일에서 정말 보람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속 깊이 느껴졌던 것이다.

공익인권법분야에서 변호사로 일하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지만 발 디딜 자리를 쉽게 찾지 못하고 있던 내게, 공감은 구성원을 새롭게 충원할 여력이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펠로우 변호사라는 이름을 선뜻 내주었다. 그리고 그렇게 공감의 펠로우 변호사 활동을 해온 것이 1년.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의 체류자격을 부당하게 취소하고 연장불허한 행정처분에 대해 다투고, 열악한 근로조건에 항의하기 위해 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고 구속당한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을 변호하면서 이 땅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서 있는 자리를 알았다.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소수자 주거권 확보를 위한 연구모임에 함께 하고, 서울역의 노숙인 강제퇴거지침,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제정과정에 대응하는 활동 등을 하며 소수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보았다. 구의원들이 부당이득한 의정비의 반환을 구하는 주민소송 상고심을 함께 하면서 주민자치에 대해 생각하고,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에 참여하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보다 넓은 시야에서 고민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활동들은 너의 자리는 무엇이나는 물음으로 다시 돌아왔다. 공익인권법 영역에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들이 많은 만큼 아무것도 모르는 새내기 변호사인 내게도 좋은 싫든 생각 이상으로 큰 발언력이 주어지곤 했다. 사건의 당사자나 해당 이슈를 고민해 온 활동가들보다 신출내기 변호사의 발언에 무게가 더 실리기도 하는 현실은 나를 오래토록 당황하게 하였다. 하나의 자격증일 뿐인 변호사 딱지에 어떤 권위들이 주어지고 있는지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그 불합리함을 납득할 수 없었고 또 납득하고 싶지 않았다. 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그러한 불합리함들과의 끊임없는 긴장마저도 껴안고 견디면서 내게 주어진 역할을 다 하는 일이 내가 지기로 한 집ियो, 내가 서기로 한 자리의 무게임을 진정으로 알겠다. 이 자리에 서기로 스스로 결정한 이상 주어진 역할을 잘 해내야겠다는 겸허하고 책임감 있는 마음을 보며 이제야 겨우 출발선에 섰다고 느낀다.

내가 이런 설익은 물음들을 듣고 답을 찾아 헤맬 때 공감의 구성원들은 선블리 조언하거나 ‘정답’을 쉽게 가르쳐 주려 하지 않았다. 그저 내가 잘 배우고 깨지고 자랄 수 있도록 곁에서, 내담자와 소통하는 자세, 활동가와 연대하는 방법, 공익변호사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놓지 않고 자신의 답을 부단히 찾아나가는 과정을 몸으로 행동으로, 묵묵하지만 치열하게 보여주었다. 이들의 가장 가까이에서 1년 동안 부대끼며 공익변호사로서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었던 것에 깊이 감사한다.

2,500명의 신규 법조인이 배출한다는 로스쿨 시대 원년, ‘공익’과 ‘인권’이라는 가치를 중심에 놓고 자신의 길을 고민하는 많은 예비법조인들을 본다. 시국사건의 변호를 맡아온 제1세대 인권변호사들, 그리고 공익과 소수자 인권의 이름으로 사회 전반에 문제제기해 온 공감들 비롯한 제2세대 공익변호사들에 이어 다시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을 만큼 공익법 분야를 지향하는 사람의 수가 늘고 관심과 고민의 스펙트럼 또한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이들 중 많은 수는 공감 등의 활동을 보면서 공익변호사로서의 삶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며 자신을 성장시켜온 이들이다. 소수의 인권변호사, 공익변호사들이 묵묵히 뿌려온 씨앗들은 또 이렇게 움터 희망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작년 한 해, 전업 공익인권변호사의 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길을 넓혀 보겠다는 뜻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여럿 만날 수 있었다. 이들을 동료삼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www.hopeandlaw.org)이라는 이름의 새 단체를 만들었고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공감에 건네고 또 공감이 내게 건넨 희망의 씨앗들을 이제 내가 다시 다른 이들에게 건넬 수 있도록, 품에 조심스럽게 받아 안고 발을 내딛어 본다.



한눈에 보는 공감

1월

[여성인권]

- 지적장애 친딸 성폭력 가해자인 배우자 상대 가사소송 보정서 제출
- 몽골 결혼이주여성 가사소송 변론
- 한국인 자녀 홀로 양육하는 라이베리아 여성 법률상담
- 한국여성단체연합 모자보건법 개정 TF 집중 워크숍 참석

[장애인권]

-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 장애인자립생활센터입법부작위 헌법소원 준비회의
- 충북장애인 권리옹호조례안 회의

[이주·난민]

- 이주노동자 퇴직금청구소송 판결
-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 변론
- 방글라데시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진행
- 이주노동자 예금에 대한 사용자의 지급 정지 및 해지 요청에 관한 의견서 작성
- 말레이시아 내 태국 난민 지원 가능성에 관한 의견서 작성
- 난민의 박해 가능성에 대한 이해 집필
- 사할린 한인 국적확인소송 준비모임
- 민변 노동위원회 이주노동팀 회의
- 이주공동행동 평가계획 회의
- 유엔난민기구 한국사무소 2010년 보고서 작성

[빈곤과 복지]

- 가재울3 뉴타운구역 세입자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항소심 위임장 및 답변서 작성
-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TF 회의
- 틈새없는 주거권 모임 회의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방문 면담

[국제인권]

- 필리핀 B사 임금 체불 사건 당사자 면담
- 국제인권네트워크 주관 '유엔 자유권규약 및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 당사국 보고서' 에 관한 의견서 작성
- 토요타 재단 후원 아시아 이주인권네트워크 프로젝트 최종 재정보고서 작성

[취약계층노동]

- 도시가스검침원 퇴직금청구소송 1심 승소
- 일본인 A 부당해고구제 신청 자문
-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호방안 토론회 발제
- 흥익대 청소/시설/경비노동자 법률지원단 결함

[성소수자]

- 교도소 내 트랜스젠더 재소자 처우 관련 국가배상청구소송 일부 승소
- 헌법재판소 균형법 제92조 계간 처벌 조항 위헌제청사건 의견서 제출



[공익법 일반]

- 홀리스지원법 공청회 토론
-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취소 상고심 변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탈북자 합동심문 관련 국가배상청구소송 변론
- 내셔널트러스트 당사자 면담
- 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추진 자문위원회 회의
- 허위통신과 표현의 자유 긴급토론회 토론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전체 회의
- 세계한인변호사회 이사회 모임
-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준비모임
- 서울구치소 고문 피해 사건 당사자 면담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일본 내 한국어성 사망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회의
- 법조언론인클럽 '올해의 법조인상' 수여



[공익법 교육 · 증개]

-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학회 연합 모임 간담회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이주매뉴얼 감수
- 민변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생 인권 교육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평론 변호사 공익활동 인터뷰
- 공감 월례포럼 개최 '4대강 사업의 법적 쟁점 - 슬픔은 흘러야 한다' (환경법률센터 정남순 변호사)



2월

[여성인권]

- 라이베리아 여성의 양육비청구의 소 제기
- 마포구청 주최 이주여성 대상 생활법률교육
-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사법절차참여권 연구팀 회의
- 이주여성인권포럼 세미나 참여
- 인신매매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제정 관련 의원실 자문
- 대한변협 주최 인권환경대회 다문화 관련 세션 토론

[장애인권]

- 청각장애인 교수, 학교 측의 명예훼손소송 항소심 승소
- 정신장애인 가족에 대한 이웃의 이사 강요 형사고소 사건 지원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기자회견&헌법 소원심판청구
-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연구조사
- 장애인 미신고시설 조사보고 토론회 토론
- 충북 장애인권리 옹호조례제정회의
- 탈시설 정책위원회 회의

[이주 · 난민]

- 경인이주노조위원장 출국명령 등 효력정지 신청 사건 대리
- 필리핀 M 강제퇴거처분 취소소송 상고장 제출
-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추가보충 이유서 제출
- 방글라데시 M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진행
- 우간다 여성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변론
- 말레이시아 내 태국 난민 지원 가능성에 관한 의견서 작성
- 외국인 자녀 출생 등록 실태 및 관계 법령 조사
- 필리핀 공동체 주최 고용허가제 포럼 장기 체류 가능성 발표
- 난민네트워크회의
- 대한변호사협회 주최 인권환경대회 이주민 관련 세션 사회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이주인권소위원회 회의
- 사할린 한인 국적확인소송 준비모임
- 이주정책개선모임



[빈곤과 복지]

- 가재울 3구역 주거이전비 소송 변론
- 주거권운동 네트워크 회의
- 틈새없는 주거권 모임 회의

[국제인권]

- 한국인권재단 주최 인권아카데미 '대우인터내셔널과 미안마 슈에 가스 프로젝트' 강의
- 미안마 슈에 가스 프로젝트 대응 관련 아시아 및 국내 NGO 전화 회의
- 아시아 인권센터 주관 아시아 인권포럼 참가
- 유엔자유권규약 관련 법무부 간담회 (아태난민권리네트워크 코디네이터 면담 및 Forum Asia Asylum Access Thailand, Jesuit Refugee Service Thailand 방문)
-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지역사무소 HIV/AIDS 관련 프로그램 담당자 면담
- 국제인권네트워크 주관 '유엔자유권규약 및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 당사국 보고서' 에 관한 의견서 작성
- 인권에 기초한 사법접근법 아시아컨소시엄 회의
-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회의

[취약계층노동]

- 홍익대 청소/시설/경비노동자 부당해고구제 신청
- 청소년 고용사업장 근로감독 정보공개청구 준비모임
- 서울여성노동자회 자문위원 기획회의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회의

[성소수자]

-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분류처분 취소 항소심 변론
- 균형법 제92조 계간처벌조항 위헌제청사건 의견서 작성
- 트랜스젠더 채소자 처우 관련 토론회 기획회의
- 가족구성원 연구모임 워크숍

[공익법 일반]

- 집시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등 형사사건 변호
- 조선적 재일동포 여행증명서발급거부처분 상고심 변론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본부 회의
- 서울교육청 성미산 협의회 회의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회의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일본 내 한국여성 사망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회의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일제피해자 인권소위원회 회의
-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준비모임

[공익법 교육 · 중개]

- 예비법조인 대상 공감 제4회 인권법 캠프 개최



-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학회 캠프 이주노동 강연
- 공익변호사 준비모임
- 공감 월례포럼 개최 - '집과 복지, 그 지긋지긋한 이야기 속에서 희망을 보다' (한국도시연구소 서종균 연구원)



3월

[여성인권]

- 연길 거주 중국동포의 인지청구의 소 제기
- 지적장애 친딸 성폭력 가해자인 배우자 상대 가사소송 변론
- 한국양성평등진흥원 주최 경찰공무원 대상 다문화교육



- 전주발전연구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원 대상 법률교육
- 비정규직 여성 직장내 성희롱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 화석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 조사관 참여
- 전국 장애인성폭력 상담소협의회 의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장애인 성폭력 처벌조항 개정에 관한 의견서 작성 및 법률자문
-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가족법팀 결혼중개법안 검토 발제
-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여성폭력방지팀/빈곤과 여성노동팀 회의
- 3.8 여성 대회 행사("노동과 삶의 권리를 위해 여성, 이제는 행동이다") 참여



[장애인권]

- 수사절차상 지적장애인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변론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심판청구
- 정신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역주민의 강제전출요구 대책위원회 참여
- 장애인차별상담전화 상담원 교육
- 성년후견 입법 후속 간담회 토론회
- 지적장애인시설 교남소망의 집 운영위원회 회의
- 장애인차별금지법 권리구제 분야 모니터링 중간보고서 작성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주년 토론회 토론폰 작성
- 서울복지재단 장애인권 자문위원회 회의
- 의왕시 농아인협회 법률교육 준비회의

[이주·난민]

- 경인이주노조위원장 출국명령 등 효력정지 신청 사건 인용 결정

- 이주노조 표적단속 및 강제퇴거 집행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변론 준비
- 파키스탄 여성 난민인정불허처분 이의신청
- 우간다 여성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변론
- 에티오피아 K 난민인정신청 관련 출입국관리사무소 면담
- 우즈베키스탄 S 사기 피해 및 보호소 1년 구금 사건 항고 기각 재정신청
- 중국 Y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 상고이유서 제출
- 사할린 한인 국적확인소송 준비모임
- 외국인 자녀 출생 등록 실태 및 관계 법령 조사
- 민변 노동위원회 이주노동팀 회의
- 이주정책개선모임
- 난민정책개선모임

[빈곤과 복지]

- 생계급여변경처분취소 상고이유서 검토
- 기초법개정공동행동 회의
- 주거권운동 네트워크 회의
- 틈새없는 주거권 모임 회의
- 홀리스행동 운영위원회 회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서비스신청권 TF팀 회의
- 입양특례법 개정을 위한 입양인 당사자 및 입양인 단체 연대모임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업무 협약 체결 및 법률자문



[국제인권]

- 토요타 재단 후원 아시아 이주인권네트워크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 작성
- 용산참사 유엔 진정 관련 박래군 활동가 면담
- 필리핀 필스전 노조탄압사건 관련 한국 일경본사 항의 방문



- 해외 한국기업 대응회의
- 아시아 난민법률구조 네트워크 회의
-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회의
- 미얀마 슈에 가스 프로젝트 회의, 지식경제부 회의, 회사관 계자 면담



- 조승수 의원실 주최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안 토론회 토론회

[취약계층노동]

-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돌봄노동자 권리 찾기 캠페인 및 여성노동선언 기자회견



- 청소년 고용사업장 근로감독 정보공개청구
- 택시기사 사급급제 강요 손해배상청구소송 준비
- 청소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캠페인단' 제도개선팀 결함
- 고용서비스 선진화 방안 관련 민주노총 대구본부 교육
- 엘지전자 해고 노동자 해고등무효확인소송 상고심 파기환송 판결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회의

[성소수자]

- 군형법 제92조 합헌결정에 대한 인권단체 기자회견 참여



-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분류처분 취소 항소심 변론

[공익법 일반]

- 탈북자 국가배상청구소송 변론
- 위법하게 지급된 도봉구의회 의원 의정비 환수 주민소송 변론
- 용산범대위 박래군, 이종희 일반교통방해 등 항소심 변론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간담회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회의
- 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추진 자문위원회 워크숍
-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회의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일본 내 한국여성 사망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회의
- 서울시 교육청 성미산 협의체 회의
-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제정 자문 간담회
-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면담
- 긴급조치 재심청구소송 2건 소장 접수

[공익법 교육 · 중개]

- 서울 YMCA 돌움교사 대상 이주아동 권리 교육
- 재단법인 동천 및 서울공익법센터 면담
- 법무법인 광장 공익위원회 면담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강의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강의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수자와 인권실무' 강의

4월

[여성인권]

- 지적장애 친딸 성폭력 가해자인 배우자 상대 가사소송 - 1심 승소
- 라이베리아 여성의 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소송 변론
- 연길 거주 중국동포의 인지청구소송 변론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상담원 법률교육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주최 이주여성 법제도 관련 법률교육



- 국가인권위 화성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
- 이주여성인권포럼 참여 - 이주여성 사회권 실태조사
- 비정규직 여성 직장내 성희롱 실태조사
-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사법절차참여권 연구팀 회의
- 성산업 이주여성 지원 연합사례회의 발제
- 법무부 주최 영주권전치주의 전문가 워크숍 토론
-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빈곤과 여성노동팀 세미나 발제 및 회의
- 햇살여성회 의뢰 필리핀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가사소송 사건 자문
- 두레방 씬터 의뢰 미군기지 클럽 중사 필리핀여성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고소사건 자문
- UN 여성차별철폐협약 NGO 보고서 작성 회의

[장애인권]

- 수사절차상 지적장애인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변론
- 정신장애인 가족에 대한 이웃의 이사 강요 형사고소 사건 지원
- 군 이명 피해 국가유공자거부처분 취소소송 변론
- 의왕시 농아인협회 농아인 법률교육
- 장애인시설협회 성년후견제 교육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주년 토론회 토론
- 장애인차별금지법 권리구제 분야 모니터링 최종보고서 회의
- 장애인차별금지법 외국사례 연구용역 계획서 작성
- 탈시설정책위원회 '장애인P&A' 발제
- 정신보건 인권교육 간담회
- KBS 1라디오 열린 토론 '장애인 보험차별' 토론
- 장추련 의뢰 정신장애인 대출사기 사건 자문
- 장추련 의뢰 중복장애를 가진 여성노숙인 방화사건 자문

[이주·난민]

- 경인이주노조위원장 출국명령 등 취소소송 변론
- 우간다 여성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변론
- 이주노조 표적단속 및 강제퇴거 집행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변론 준비

- 파키스탄 여성 및 자녀들 난민인정불허처분 이의신청
- 사할린 한인 국적확인소송 준비모임
- 에티오피아 K 난민인정신청 관련 의견서 제출
- '이주정세와 우리의 방안' 토론회 발제
- 난민의료지원간담회
- 난민정책개선모임
- 이주정책개선모임
- 세계한인변호사회 공익위원회 회의
- 민변 노동위원회 이주노동팀 회의
- 난민 관련 유엔난민기구-법조인 모임
- B씨 미안마 국적 배우자비자 관련 자문
- 예수회 관구본부 베트남 수사들을 위한 이주교육 - 한국 이주민의 인권 강의



[빈곤과 복지]

-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특별위원회 회의
- 강제퇴거금지법 쟁점포럼 기획 및 제1회 강제퇴거금지법 쟁점포럼 개최
- 기초법개정공동행동 회의
- 국제아동인권센터 창립준비모임 감사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 틈새없는 주거권 모임 회의
- 국민기초생활수급 집단신청 선전 및 기자회견



[국제인권]

- 아시아 난민법률구조 네트워크 워크숍
- 인권에 기초한 사법접근법 아시아컨소시엄 워크숍 및 운영위원회 회의
- 아태난민권리네트워크 운영위원회 회의
- 국제인권네트워크 회의
- 필리핀 필스전 노조탄압사건 관련 회의
-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회의
- 해외 한국기업 대응회의
- 아시아 지역 한국기업의 인권 침해 사례 및 대응 방안 모색 워크숍 토론



[취약계층노동]

- 도시가스검침원 퇴직금청구소송 항소심 변론
- 청소년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캠페인단' 제도개선팀 모임
- 가사노동 관련 외국의 입법례 연구조사
- 전국여성노동조합 '교과부 지침 변경에 따른 학교회계직원 임금 체불 사건' 자문
- 은행 비정규직 노동자 경조사금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결과 통보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워크숍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회의

[성소수자]

-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분류처분 취소 항소심 승소
- 트랜스젠더 수행자 처우 관련 국가배상청구 항소심 변론
- '구금시설과 트랜스젠더의 인권' 토론회 공동주최



[공익법 일반]

- 위법하게 지급된 도봉구의회 의원 의정비 환수 주민소송 변론
- 조선적 재일동포 여행증명서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 심 진행
- 용산범대위 박래군, 이종희 일반교통방해 등 항소심 변론
- 국가유공자 유족비해당결정 취소소송 변론
- 00시 : 건설현장 총괄감리원 교체 관련 고발장 작성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회의
-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토론
- 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추진 자문위원회 회의

[공익법 교육 · 중개]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수자와 인권실무' 강의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조윤리 - 변호사 공익활동' 강의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의 공익활동' 강의
- 이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조윤리 강의
- 서울지방변호사회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실무협의 회 회의
- 법무법인 태평양 공익위원회 모임
- 공감 월례포럼 개최 - '빈곤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와 복지제도 (빈곤사회연대 최예륜 사무국장)

5월

[여성인권]

- 라이베리아 여성의 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 가사심판
- 필리핀 이주여성 성매매 강요 공소제기결정 사건 증인신문 준비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주최 이주여성 법제도 관련 법률교육
-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주최 장애인 성폭력 예방 전문가 과정 교육
-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사법절차참여권 연구팀 회의
- 여성노동자 직장내 성희롱 실태조사
- 두레방 씬터 의뢰 미군기지 클럽 종사 필리핀여성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고소사건 자문
- 법무부 주최 영주권 전치주의 전문가 워크숍 토론 참여
- UN 여성차별철폐협약 NGO 보고서 작성
-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월례회/빈곤과 노동팀/반(反)성매매 팀 회의

[장애인권]

- 사회복지시설의 보장시설 제외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토론



- 정신장애인 가족에 대한 이웃의 이사 강요 형사고소 사건 지원
- 군 이명 피해 헌법소원심판청구
- 장애인고용공단 직원 대상 '고용차별과 권리 구제' 법률 교육
- 장애인차별금지법 열린 강좌 교육
- 국가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법 외국 사례' 연구용역 계약 체결
- 장애인 차별금지법 권리구제 분야 모니터링 최종보고서 작성
- 장추련 의뢰 중복장애를 가진 여성노숙인 방화사건 자문
- 탈시설정책위원회 회의
- 장애인법 연구모임 회의

[이주 · 난민]

- 이주노조 표적단속 및 강제퇴거 집행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변론

- 파키스탄 여성 및 자녀들 난민인정불허처분 이의신청
- 우간다 여성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변론
- 우즈베키스탄 S 사기 피해 및 보호소 1년 구금 사건 재정신청
- 경인이주노조위원장 출국명령 등 취소소송 변론
- 에티오피아 K 난민인정신청 관련 의견서 제출
- 외국인 자녀 출생 등록 실태 및 관계 법령 조사
- 이주정책개선모임
- 난민의료지원간담회
- 난민법제정운동모임
- 이주연구모임 세미나
- 민변 노동위원회 이주노동팀 회의

[빈곤과 복지]

- 상도4동 강제퇴거 손해배상청구소송 기획, 준비
- 기초법개정공동행동 회의
-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특별위원회 회의 및 2차 쟁점포럼 개최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회의
- 사회복지서비스신청권 확대 준비모임 실무회의
- 틈새없는 주거권 모임 회의
-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 의뢰 친권자변경신청

[국제인권]

-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회의
- 해외 한국기업 대응회의

[취약계층노동]

- 한국사회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간병인과 돌봄 노동' 토론
- 택시기사 사납금제 강요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 접수
- 도시가스검침원 퇴직금청구소송 항소심 변론
- 청소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캠페인단' 제도개선팀 모임
- 전국여성노동조합 '교과부 지침 변경에 따른 학교회계직원 임금 체불 사건' 의견서 작성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워크숍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회의



[성소수자]

- 트랜스젠더 수행자 처우 관련 국가배상청구 항소심 변론
- 가족구성원연구모임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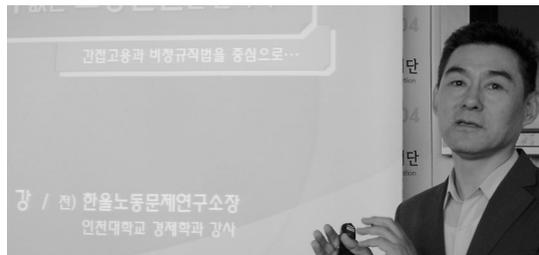
[공익법 일반]

- 위법하게 지급된 금천구의회 의원 의정비 환수 주민소송 항소심 변론
- 위법하게 지급된 도봉구의회 의원 의정비 환수 주민소송 상고장 제출
- 조선적 재일동포 여행증명서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진행
- ○○시 건설현장 총괄감리원 교체 관련 고발장 작성
- 국가유공자 유족비해당결정 취소소송 변론
- 용산범대위 박래균, 이종희 일반교통방해 등 항소심 변론
- 'Global commission on HIV&law 아시아태평양지역보고서' 한국 보고서 작성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일본 내 한국여성 사망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회의
- ○○교회 명예훼손 사건 자문
- 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추진 자문위원회 회의 및 지역청 순회 공청회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회의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위한 활동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회의
-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회의
- 세계한인변호사회 이사회

[공익법 교육 · 중개]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수자와 인권실무', '국제인권법' 강의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소송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사건' 실무 강의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조윤리 강의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과 법' 강의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강의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 학회 특강

- 공익변호사 준비모임
- 공익변호사 양성을 위한 '제1회 공익변호사 라운드 테이블' 개최
- 법무법인 프로보노 회의
- 서울지방변호사회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실무협의회 회의
- 고려대학교 CLEC 다문화가족팀 지원팀 미팅
-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인턴 기관 방문
- 법무법인 태평양 공익위원회, 안산 '아시아의 창' 연계 워크숍 기획
- 공감 월레포럼 개최 - '노동자 없는 현실을 말하다, 간접고용과 비정규직법을 중심으로' (노동과 꿈 하종강 대표)



6월

[여성인권]

- 필리핀 이주여성 성매매 강요 공소제기결정 사건 증인신문 준비
- 필리핀 대사관 의뢰 필리핀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사망사건에 대한 고소대리
- 법관 연수 이주여성과 법제도 현황 강의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상담원 교육
-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직장내 성희롱 실태조사
-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사법절차참여권 연구팀 회의
- 가족법학회 '다문화 가정의 가족법적 문제점' 토론회 참여
- 국내외 아동 성폭력 판례 분석 공동연구
- 이주여성 사회권 실태조사 준비
- UN 여성차별철폐협약 NGO 보고서 작성 참여 및 번역



-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월례회/빈곤과 노동팀/성매매방지팀 /여성폭력방지팀 회의

[장애인권]

- 군 이명 피해 국가유공자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
- 지적장애인 보험차별 항소심 변론
- 서울 장애인시설협회 직원 대상 교육
- 국가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법 외국 사례' 연구용역
- 장애유형별 자립생활 현황 및 지원체계 개선연구 회의
- 장애인 신용카드 자필서명 대응연구 회의
- 중복장애를 가진 여성노숙인 방화사건 변호
- 대구장애인인권보장 조례 자문
- 서울복지재단 장애인시설 인권가이드라인 자문회의 참여
- 탈시설정책위원회 회의
- 장애인법 연구모임

[이주 · 난민]

- 베트남 노동자 파업 구속사건 1심 변론
- 경인이주노조위원장 출국명령 등 취소소송 변론
- 경인이주노조위원장 체류연장불허처분 취소의 소 제기
- 우간다 여성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진행
- 난민법제정운동 관련 유엔난민기구, 국회의원, 입법조사관 면담
- 외국인 자녀 출생 등록 실태 및 관계 법령 조사
- 비동포 합법화 배제 관련 진정 사건 자문
- 이주정책개선모임
- 난민네트워크 회의
- 대한변호사협회 이주민 관련 법률 교육 '난민법' 강의
- 세계 난민의 날 및 난민협약 60주년 기념 '난민과 함께하는 플래시몹' 진행



[빈곤과 복지]

-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특별위원회 회의 및 3차 쟁점포럼 개최
- 강제퇴거금지법 초안 작성
- 사회복지서비스신청권 준비모임
- 틈새없는 주거권 모임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복지재원 마련 방안 내부워크숍

[국제인권]

-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회의
- 유엔난민기구 NGO 자문회의
- 해외 한국기업 대응회의

[취약계층노동]

- 도시가스검침원 퇴직금청구소송 항소심 변론
- 청소년 고용사업장 근로감독 정보공개청구
- 노인장기요양보험 3주년 평가 토론회 발제
- 엘지전자 해고 노동자 해고등무효확인소송 파기환송심 변론
- 단시간노동 법제 연구 모임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회의

[성소수자]

- 트랜스젠더 수형자 처우 관련 국가배상청구 항소심 변론
-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분류처분취소 상고심 진행
- East Asian Law Society Conference 2011 - 동아시아지역 LGBT 공익소송 연구조사
- 가족구성원연구모임 회의 : 파트너십 법안 초안 검토

[공익법 일반]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위법하게 지급된 금천구의회 의원 의정비 환수 주민소송 항소심 변론
- 위법하게 지급된 도봉구의회 의원 의정비 환수 주민소송 상고이유서 제출
- 촛불 집회 게시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사건 변론



- ○○시 건설현장 총괄감리원 교체 관련 진정서 작성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 대응모임
- 입양제도 개선 관련 유엔아동권리협약 issue of list 답변 작성
- 표현의 자유 기획 포럼 토론회 토론
- 'Global commission on HIV&law 아시아태평양지역보고서' 한국 보고서 작성
- 법사회학회 춘계학술대회 토론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일본 내 한국여성 사망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회의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대응모임
- 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추진 자문위원회 회의
- '10회 아시아·태평양 에이즈대회' - 강제검사 관련 대응모임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전체회의
- 방송통신대학교 인권법 개정 연구회의
- 세계한인변호사회 이사회
- 국회 사법개혁추진 1인 시위

[공익법 교육·중개]

- 공익변호사 양성을 위한 '제2회 공익변호사 라운드 테이블' 개최



- 로펌 공익 활동 담당자 간담회 개최 및 발표
- 공감 월례포럼 개최 - 영화 <중로의 기적> 관람 및 감독과의 만남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수자와 인권실무' 강의
- 공익변호사 준비모임

7월

[여성인권]

-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49차 세션 한국정부 심의에 대한 NGO 대표단 참가
- 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여성 법률교육
- 법무부의 인신매매 관련 형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제출
-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성매매방지팀/여성폭력방지팀 회의

[장애인권]

- 지적장애인 보험차별 항소심 변론
- 중복장애를 가진 여성노숙인 방화사건 변호
- 장애인 보험가입 거부에 대한 구제청구소송 변론
- 장애인법 연구모임
- 장애인차별금지법 외국사례 연구
- 장애인 신용카드 자필서명 대응연구
- 장애 유형별 자립생활 현황 및 지원체계 개선연구

[이주·난민]

- 파키스탄 여성 및 자녀 종교적 박해 등을 이유로 한 난민인정 불허처분 취소소송 변론
- 우간다 여성 난민인정 불허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진행
- 경인이주노동자위원장 출국명령 등 취소소송 변론
- 베트남 노동자 벌금형 선고를 이유로 한 보호 및 강제퇴거 명령 취소 및 집행정지 사건 변론
- 네팔 노동자 손해배상청구소송 변론
- 베트남 노동자 파업구속사건 형사소송 기자회견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보고서 '이주외국인의 인권' 작성
- 세이브더칠드런 운영 다문화센터 '다린' 과 법률지원 사업 협약 체결
- 난민의료지원간담회 회의
- 난민정책개선네트워크 회의



-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가이드라인 중간보고 자문
- 외국인 자녀 출생 등록 실태 및 관계 법령 조사

[빈곤과 복지]

-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특별위원회 회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회의
- 서비스신청권 준비모임 회의

[국제인권]

-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회의
- 해외 한국기업 대응회의

[취약계층노동]

- 도시가스검침원 퇴직금청구소송 항소심 변론
- 택시기사 사납금제 강요 손해배상청구소송 변론
- 학교비정규직 노동권 보호방안 토론회 토론
-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대응 모임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회의
- 단시간노동 법제 연구 모임
-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관련 1인 시위
- 노인장기요양보험 3주년 평가 토론회 발제 및 기자회견



- 공익제보자 해고무효확인소송 변론
-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입양정책간담회 토론
- 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추진 자문위원회 회의
- 탈북자 국가배상청구소송 변론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간담회, 법안대응팀 회의
- 국가유공자 유족비해당결정 취소소송 변론
-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회의

[공익법 교육 · 중개]

- 법학전문대학원 하계 실무수습



- 메가로스쿨 공익변호사 특강 강의
- 민변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생 대상 특강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법무실습 강의
- 공감 월례포럼 개최 - '학생인권을 말하다' (건국대 법학과 한상희 교수)



[성소수자]

-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분류처분취소 상고심 진행
- 트랜스젠더 수형자 처우 관련 국가배상 항소심 변론

[공익법 일반]

-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자를 지지하는 2차 희망버스 무지개 쿠퍼 버스 참가

8월

[여성인권]

- 국제이주기구(IOM) 주최 '쉼터관리 및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에 관한 워크숍' 발제
- 여성·아동 폭력피해 중앙지원단 2011년 신규종사자 교육
-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사법절차참여권 연구팀 회의



- 여성노동자 성희롱 실태조사 및 대안연구 토론회 발제
- 몽골 결혼이주여성 양육권 소송 변론
- 국내외 아동 성폭력 판례 분석 공동연구

[장애인권]

- 정신보건기관 운영자 대상 인권교육
- 정신장애인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연구
-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보장을 위한 공익소송 회의
- 교남소망의 집 생활자 퇴소 자문

[이주·난민]

- 외노협 활동가 대상 법률교육

[빈곤과 복지]

-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방침 철회/공공역사 홀리스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회의
-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진정 대리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법률전문위원 위촉 및 사례 자문
- 틈새없는 주거권모임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면담

[국제인권]

- 아태인권리네트워크 운영위원회 회의
- 인권에 기초한 사법접근권 아시아컨소시엄 총회

[취약계층노동]

- 청소년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방안 토론회 발제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워크숍
- 요양간병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따끈따끈 캠페인' 관련 법령 개정 논의
- 서울관악지방고용노동청 상대 청소년 고용사업장 근로감독 정보공개청구소송 소장 접수

[성소수자]

- 가족구성권연구모임 회의 - 파트너십 법안 검토
- SOGI(Sexual Orientation & Gender Identity)법 연구모임(준) 회의

[공익법 일반]

- 위법하게 지급된 금천구의회 의원 의정비 환수 주민소송 상고이유서 제출
- '10회 아시아·태평양 에이즈 국제학술대회(ICAAP)' 외국인 강제검진 관련 발표



[공익법 교육·중개]

-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학회 캠프 강의
- 공익변호사 양성을 위한 '제4회 공익변호사 라운드 테이블' 개최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법무실습 강의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법무실습 관련 회의

9월

[여성인권]

-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성희롱 피해자 지지방문



- 한국인 남성의 일방적 변심으로 인한 입국 전 혼인파탄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 재혼 결혼이주여성의 F-2 비자발급거부처분에 대한 자문
- 필리핀대사관 의뢰 결혼이주여성 사망 형사사건 자문



- 이주외국인 인권 가이드라인 연구 협력 · 자문(연예홍행비자 소지 외국인 부분)
- 국내외 아동 성폭력 판례 분석 공동연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다문화 중장기 정책 개발 TF 자문회의
-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사법절차참여권 연구팀 회의
- 여성 · 아동 폭력피해 중앙지원단 의뢰 성폭력 피해아동 심리상담 전문교육과정 교육 (아동성폭력 관련법과 형사절차)

[장애인권]

- 정신장애인 가족에 대한 이웃의 이사 강요 형사 고소 대리 - 일부 유죄
- 지적장애인 보험차별 항소심 변론
- 중복장애를 가진 여성노숙인 방화사건 변호
- 연세대 의대 인권의학 강의 (정신장애인의 인권)
- 장애인 차별금지법 외국사례 연구
- 정신장애인 편견해소를 위한 인권교육방안 연구
- 탈시설정책위원회 정기세미나 및 회의
- 장애인 신용카드 자필서명 대응연구 연구
- 전북 장애인권리옹호 조례제정 간담회 토론
- 장애인법 연구모임 회의
- 정신보건기관 운영자 대상 인권교육

[이주 · 난민]

- 경인이주노조위원장 출국명령 등 및 체류연장불허처분 취소소송 변론
- 네팔 노동자 손해배상청구소송 변론
- 파키스탄 여성 및 자녀 종교적 박해 등을 이유로 한 난민인정 불허처분 취소소송 변론
- 베트남 노동자 파업 구속사건 1심 변론
- UNHCR 의뢰 무국적 이주 아동 출생신고 및 비자 신청
-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가이드라인 중간 보고 자문회의
- 이주정책개선모임
- 민변 노동위원회 이주노동팀 회의
- 양구 농업 이주노동자 사건 대응 모임 및 기자회견

[빈곤과 복지]

-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특별위원회 회의

-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의뢰 친양자 입양신청 및 친권 상실심판청구 대리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법률교육 사례 워크숍 강의



-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방침 철회/공공역사 홀리스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회의
- 틈새없는 주거권 모임 회의

[취약계층노동]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상대 청소년 고용사업장 근로감독 정보공개청구소송 소장 접수
- 택시기사 사납금제 강요 손해배상청구소송 변론
- 영양보호사 노동권 보호를 위한 '따끈따끈 캠페인단' 정책개선모임
- 돌봄연대 워크숍 가사노동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발제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워크숍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회의
- 단시간노동 법제 연구 모임

[성소수자]

- 트랜스젠더 수형자 처우 관련 국가배상청구 항소심 변론
-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성적 지향' 관련 대응활동
- SOGI(Sexual Orientation & Gender Identity)법연구회 회의
- '일본의 LGBTI 관련 법제도와 현황' 초청 간담회 공동주최
- 가족구성원연구모임 5주년 홈커밍 발표회 참여



[공익법 일반]

- 촛불집회 게시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사건 상고이유서 제출
- 교과부 규탄 기자회견 집시법위반 형사소송 변론
- HIV감염인 수형자 국가인권위 진정사건 면회
- 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추진 자문위원회 회의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사무국 회의
- 탈핵 법률가 모임
-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회의

[공익법 교육 · 증개]

- 방송통신대학교 '인권법/이주' 관련 강의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법무실습 강의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법무실습 강의
- 법학전문대학원 리걸 클리닉 공통 교육 진행
-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강의

10월

[여성인권]

- 필리핀대사관 의뢰 결혼이주여성 사망 형사 사건 자문



- 한국인 남성의 일방적 변심으로 인한 입국 전 혼인파탄 사건 변론
- 몽골 결혼이주여성 양육권 소송 대리
- 한국 자녀 양육 중국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F-2 비자 발급 지원
- 베트남, 몽골, 필리핀 현지 결혼이주여성 교육 담당자 대상 법률 교육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주최 장애인 성폭력 상담원 교육
- 여성, 아동 폭력피해 중앙지원단 주최 2011년 성폭력 피해 장애인 심리상담 전문교육과정 강의
- 이주여성 체류권 보장을 위한 사례 대응 회의
- 국내외 아동 성폭력 판례 분석 공동연구
-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월례회/여성폭력방지팀/빈곤과 여성 노동팀 회의
- 발달장애인 등 젠더폭력 피해자의 사법절차참여권 연구팀의 법무부 면담과 회의

[장애인권]

- 중복장애를 가진 여성노숙인 방화사건 변호
- 지적장애인 보험차별 항소심 변론
- 군대 이명 행정소송 대리
- 정보보건기관 운영자 대상 인권교육 강의
- 장애인차별금지법 외국사례 연구
- 정신장애인 편견해소를 위한 인권교육방안 연구
- 장애인 신용카드 자필서명 대응연구 간담회 발제
- 장애유형별 자립생활 현황 및 지원체계 개선 연구
- 도가니대책위 출범 및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기자회견
- 장애여성 성폭력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 사회복지사업법 10만인 시민청원운동 선포식 기자회견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방향 정책토론회 발제



[이주 · 난민]

- 파키스탄 여성 및 자녀 종교적 박해 등을 이유로한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 변론
- 베트남 노동자 벌금형 선고를 이유로 한 보호 및 강제퇴거 명령 취소 및 집행정지 사건 변론
- 베트남 노동자 파업 구속사건 항소심 변론
- 국가인권위원회 의뢰 벌금 전과를 이유로 한 국적불허처



- 분 진정에 대한 자문 의견서 작성
- 애버트재단 이주민 사회권 실태 및 법제 현황 연구조사
- 건국대학교 이주노동 관련 강의
- 양구 농업 이주노동자 사건 대응 모임 및 기자회견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이주인권소위원회 '이주노동 법제 비판' 세미나 발제
- 이주민 사회복지법제 현황과 과제 연구팀 회의
- 이주정책개선모임
- 민변 노동위원회 이주노동팀 회의

[빈곤과 복지]

-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의뢰 친권상실심판청구 대리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자문
- 서울변호사회 주최 '강제퇴거 금지 법제화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세미나' 발제
-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특별위원회 회의
-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방침 철회/공공역사 홀리스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회의
- 틈새없는 주거권 모임 회의
- 홀리스행동 운영위원회 회의
-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국회 토론회 발제



[취약계층노동]

- 택시기사 사납금제 강요 손해배상청구소송 변론
- 도시가스검침원 퇴직금청구소송 항소심 변론
- 은마아파트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법률지원
- 요양보호사 노동권 보호를 위한 '따끈따끈 캠페인단' 정책개선모임
- 경북대 '국가고용전략 2020' 특강

- 가사노동자 보호 방안 관련 돌봄연대 정책팀 회의
-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대응 모임
-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 주사바늘 감염 사건 대응 모임
- 엘지전자 해고 노동자 해고등무효확인소송 파기환송심 변론
- 단시간노동 법제 연구 모임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워크숍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회의

[성소수자]

- 트랜스젠더 수행자 처우 관련 국가배상청구 항소심 변론
-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성적 지향' 관련 대응활동
- SOGI(Sexual Orientation & Gender Identity)법 연구회
- 제2회 동아시아 지역 법과 사회 국제컨퍼런스 참여
- 구금시설 대응모임 회의
- 가족구성원연구모임 회의

[공익법 일반]

- 유신헌법 제53조 및 긴급조치 헌법소원 사건에 관한 헌법 재판소 공개변론
- 교육과학부 규탄 기자회견 집시법위반 형사소송 변론
- HIV감염인 수행자 국가인권위 진정사건 대리
- 탈북자 국가배상청구소송 변론
- 용산범대위 박래군, 이종희 일반교통방해 등 상고장 접수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사무국 회의
- 탈핵 법률가 모임
-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회의
- 국가인권위원회 10주년 토론회 준비회의
- 강릉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지도자 과정 강의

[공익법 교육 · 증개]

- 방송통신대학교 인권법 강의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법무실습 강의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법무실습 강의
- 일본 도쿄 권리옹호 변호사단체 면담
- 변호사 공익활동 시스템 관련 법률신문 인터뷰
- 공감 월례포럼 개최 - '녹색정치, 왜 필요한가?' (하승수 변)



호사)



11월

[여성인권]

- 한국인 남성의 일방적 변심으로 인한 입국 전 혼인파탄 사건 변론
- 몽골 결혼이주여성 가사 소송 대리
- 여성·아동 폭력피해 중앙지원단 2011년 성폭력 피해 장애인 심리상담 전문교육과정 강의
- 결혼이주민 체류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주최
- 국내외 아동 성폭력 판례 분석 공동연구
- 여성노동자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 실태 개선을 위한 법 개정 작업
-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 대응 기획단 내부 워크숍 발제
- 민변 2011년 인권보고서 - 여성인권 분야 집필 참여
- 성산업 유입 이주여성의 사례 연합회의 발제

[장애인권]

- 서부장애편복지관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
- 장애인차별금지법 3주년 평가 인천장애우대학 교육
- 금융거래에서의 장애인차별사례조사 및 관련 법령개정 연구보고서 완료
- 장애유형별 자립생활 현황 및 지원체계 개선 연구
- 정신장애인 편견해소를 위한 인권교육방안 연구
- 도가니대책위 법률지원팀 회의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 토론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1인 시위

- 한우리장애인복지관 직원대상 법률교육
-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발표회 토론
- 중북장애를 가진 여성 노숙인 방화사건 제1심 판결 선고 (일부 무죄)

[이주·난민]

- 출입국 단속 국가배상청구소송 변론
- 이주민 사회권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연구
- 사할린 무국적 동포 국적판정 신청자료 연구
- 민변 노동위원회 이주노동팀 회의
- 이주정책개선모임
- 고용허가제 개정안 의견서 작성
- 이주노동자 집중 단속 관련 1인 시위
- 국가인권위원회 10주년 토론회 발제



[빈곤과 복지]

-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의뢰 친양자 입양신청 및 친권 상실심판청구 대리
-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회의
- 소수자 주거권 확보를 위한 틈새모임 워크숍
- 서울역 강제퇴거 공동대책위원회 회의
-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방침 철회를 위한 포럼 발표
-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방침 철회를 위한 서울역 앞 1인 시위
- 기초법개정공동행동 워크숍

[국제인권]

- 해외 한국기업 대응회의



[취약계층노동]

- 택시기사 사납금제 강요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변론
- 도시가스검침원 퇴직금청구소송 항소심 변론
- 서울관악지방고용노동청 상대 청소년 고용사업장 근로감독 정보공개청구소송 변론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상대 청소년 고용사업장 근로감독 정보공개청구소송 변론
- 은마아파트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법률지원
- 영림중학교 노동인권 교육
- 요양보호사 노동권 보호 법안 마련 토론회 발제
- 돌봄노동자 조직화에 관한 토론회 토론
- 가사노동자 보호 방안 관련 돌봄연대 정책팀 회의
- 가사사용인의 근로실태 및 보호방안 프로젝트 보고서 작성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성희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연대활동
- 노사분규 현장에서의 영역폭력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프로젝트 보고서 작성
- 학교회계직원 연차유급수당 관련 의견서 작성
- 서울여성노동자회 법률상담

[성소수자]

-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성적 지향' 관련 대응활동
- 민변 2011 한국인권보고서 - 성소수자 및 HIV/AIDS 분야 집필

[공익법 일반]

- 탈북자 국가배상소송 대리
- 국가유공자 유족비해당결정 취소소송 변론
- 교육과학부 규탄 기자회견 집시법위반 형사소송 변론
-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회의
- 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추진 자문위원회 회의
- 탈핵 법률가 모임

[공익법 교육 · 증개]

- 방송통신대학교 인권법 강의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법무실습 강의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법무실습 강의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특강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 사회 특강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토론회 참석
- 한겨레 청춘상담업 인터뷰
- 공감 월례포럼 개최 - '모두가 행복한 대안개발과 마을공동체' (장수마을 대안개발연구회 박학룡 대표)



12월

[여성인권]

- 한국인 남성의 일방적 변심으로 인한 결혼이주여성의 입국 전 혼인파탄 사건 변론
- 몽골 결혼이주여성 가사소송 대리
- 여성노동자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 실태 개선을 위한 법 개정 작업
- 국내외 아동 성폭력 판례 분석 공동연구
- '동아시아 인신매매 실태와 효과적 대책' 국제회의 발표
- 전국장애여성 성폭력상담소협의회 워크숍 발표

[장애인권]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주최 RI대회 '금융거래상의 장애인 차별문제' 세션 발표
- 동국대 일산병원 정신과 직원 대상 정신장애인 인권교육
- 군대이명피해자연대 회의
- 민변 인권보고대회 도가니 사태 관련 발표
- 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주최 성년후견제 도입 후 대응 방안 토론회 발제
- 유엔 아태장애인 10년 계획 간담회 토론
- 장애인보험소송팀 회의



- 장애인법 연구모임 회의
- 서울복지재단 장애인인권자문회의
- 경남 장애인복지시설 조사 관련 의견서 작성
- 마포장애인부모회 학교폭력 모니터링 요원 대상 법률교육 ‘학교폭력의 법률문제’

[이주·난민]

- 미안마 난민인정신청 사건 상담
 - 이주노동자의 장애보상 ‘연금’ 수급권 소멸 헌법소원 여부 의견서 작성
 - 이주민 사회권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연구
 - 이주인권가이드라인 실태조사 보고회 패널
 - 이주아동 출생등록 유권해석 질의서 작성
 - 민변 노동위원회 이주노동팀 회의
- 난민법안 관련 의원실 면담

[빈곤과 복지]

-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의뢰 친양자 입양신청 및 친권 상실심판청구 대리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의뢰 법률상담에 대한 자문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위원회 회의
-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특별위원회 회의
- 소수자 주거권 확보를 위한 틈새없는 주거권 모임
-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방침 철회/공공역사 홀리스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회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회의

[국제인권]

- 해외 한국기업 대응회의
- 버마가스개발 프로젝트 관련 회사 면담
- 해외자원개발, 문제와 대안을 위한 토론회 사회



[취약계층노동]

- 택시기사 사납금제 강요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변론
- 도시가스검침원 퇴직금청구소송 항소심 변론
- 서울관악지방고용노동청 상대 청소년 고용사업장 근로감독 정보공개청구소송 변론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상대 청소년 고용사업장 근로감독 정보공개청구소송 변론
- 가사노동자 보호 방안 관련 돌봄연대 정책팀 회의
- 가사사용인의 근로실태 및 보호방안 프로젝트 보고서 작성
- 노사분규 현장에서의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프로젝트 보고서 작성

[성소수자]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원안 통과를 위한 성소수자 공동행동 점거시위 및 대응활동



- 허위 사망신고된 트랜스젠더 무면허운전 사건 상담
- 파키스탄 동성애자 난민신청 건 상담 및 대리
- 가족구성권연구모임 회의
- 제6회 무지개인권상 수상

[공익법 일반]

- 교육과학부 규탄 기자회견 집시법위반 형사소송 변론
- 인권재단 2012년 인권회의 기획위원회 모임
-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회의
- 탈핵 법률가 모임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이사회



[공익법 교육 · 중개]

- 공감 월례포럼 개최 - '사람과 법의 힘으로 인권과 환경을 지킨다' (국제 NGO 'Earth Rights International' Paul Donowitz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로펌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회의
- 사법연수원 41기 공익변호사 펀드 운영위원회 회의



공감이 걸어온 길



2003	12월	엄형국 변호사 아름다운재단 근무 시작
2004	1월	정정훈, 소라미, 김영수 변호사 근무 시작
	1.16	'공익변호사그룹 운영을 위한 간담회' 개최
	2월	김민경 간사 근무 시작 (~2005.5)
	2월	부안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 준비위원회 변호사 파견
	3월	제1차 '공익단체에 대한 변호사 파견지원사업' 진행 (12개 공익단체)
	8월(~2007)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제반 활동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공동 활동)
	11월	제2차 '공익단체에 대한 변호사 파견지원사업' 진행 (12개 공익단체)
	12월	황필규 변호사 근무 시작
	12월(~현재)	미안마 내 한국기업 인권감시활동 (현지 실태조사, 국제 세미나 개최, 미국 하버드 로스쿨 International Human Rights Clinic과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공동 제출 등)
2005	2월(~12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조약기구의 한국 인권상황 심의 관련 NGO 보고서 공동 제출 및 현지(스위스 제네바) 활동
	3월	윤정원 펠로우 근무 시작 (~2006.2)
	3.21~4.7	전국 장애인단체 활동가를 위한 법률학교 진행
	3.24	공감 인턴십 프로그램 시작
	4월~12월	국제결혼중개구조 베트남·필리핀 현지조사 및 결혼중개업 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 활동
	5월	전영주 간사 근무 시작 (~2007.8)
	7월	제3차 '공익단체에 대한 법률지원사업' 진행(13개 공익단체)
	8월	송성수 펠로우 근무시작 (~2006.1)
	11.2	법무법인 총정과 공익소송 업무협약 체결

2006

1월	자문위원단 구성 (15인)
2월	제4차 공익단체에 대한 법률지원사업 시작(11개 단체)
2,22	공감 2주년 기념 후원행사 '공감과 공감하기' 개최
4,19	37기 사법연수생 160명, 공익변호사기금에 기부약정
6,1~12,31	차별에 맞선 소송-이주노동자 차별적 제도, 관행에 대한 기획소송
6월~7월	우리는 선의의 파파라치 - '차별적 국제결혼광고 반대서명운동' 전개 (차별적국제결혼광고 대응을 위한 공동행동)
6월	권회 간사 근무 시작 (~2009.6)
7,2	보험사의 장애아동보험가입 거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승소
8월	제5차 공익단체에 대한 법률지원사업 시작(7개 단체)
9월	김미라 펠로우 근무 시작 (~2007.2)
9월	2006주민참여가이드북 - 주민직접참여제도 실무매뉴얼 집필 (아름다운재단, 함께하는시민행동 발간)
10,11~10,30	해외탐방- 미국 공익법단체를 찾아서
10,13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 등 정보공개청구소송 승소
10,21~10,30	스위스 제네바 UN 인권이사회 참석-NGO 반박보고서 제출
11월	〈노인학대예방을위한법률매뉴얼〉집필 및 법률교육 (대한변호사협회, 경기도노인학대예방센터 발간)
12,1	한국장애인인권상 정책개선 부문 수상
12,7	제20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상 수상
12,3	정정훈 변호사, 제1회 무지개 인권상 수상

2007

1,11~8,20	황필규 변호사 - University of Oxford Centre on Migration, Policy & Society 파견근무
2월	장서연 변호사 근무 시작
3월	희망변론 프로젝트 - 공익단체 법률지원 시작(7개 단체)
5,7	공익단체 활동가를 위한 법률학교 진행
5월	〈이주노동자 지원활동가를 위한 법률매뉴얼〉 발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공동기획)
7월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집필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발간)
6,22	중소기업중앙회를 상대로 낸 산업연수생 손해배상청구소송, 산업연수생 퇴직금 청구소송 승소
6,26	중국 민주당원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 승소 - 2008.11.15 대법원 확정 판결
7,5	법무법인 태평양 공익위원회와 파트너십 체결
7,21	지방자치단체 음식물 처리장 설치예산 낭비에 대한 주민소송 - 광명경찰서 및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함께 광명시민을 대리하여, 전 광명시장 등 광명음식물쓰레기처리장 부실시공 책임자들을 상대로 낭비예산 약 20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
7,26~8,3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07년 한국 정부 심의 회의 NGO 대표단 참석-NGO의 반박보고서 제출
8월	전은미 간사 근무 시작
9,28	필리핀 가톨릭추기경 Gaudencio B. Cardinal Rosales로부터 감사패 수상
10,23~11,22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활동가를 위한 권역별 법률교육
12,10(~현재)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반차별공동행동 연대활동
12,13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으로부터 감사패 수상
12,26	비닐하우스촌 수정마을 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12월(~2008. 10)	유엔인권이사회의 한국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관련 NGO 보고서 공동 제출 및 한국인권 상황 관련 유엔특별절차 진정 공동 제출

2008

1.14	법무법인 총정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협약 중개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법률지원 활동을 법무법인 총정에 연계해 로펌과 공익단체 간 직접적인 법률지원협약 체결 중개
2.14~2.16	제1회 공감 인권법 캠프 개최
3.1	차혜령 변호사 근무 시작
3.25	법조협회 제2회 사회봉사단체 우수단체 선정
4.11(~12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관련 점검 및 대응 활동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공동 활동)
5.14(~12월)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및 증진 방안 모색을 위한 제1차 국제토론회' 국가보고서 작업
5.16	공익법 활성화를 위한 로펌 프로보노 담당변호사 간담회 개최
5.17	국제심포지엄 <로스쿨과 공익인권법 : 전망과 모색> 공동 주최
6.2	법무부의 이주노동자 지도부 강제퇴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공동 활동)
7.14	춧불집회 인권침해 관련 유엔특별절차 진정서 작업
7.15	군대내 스토킹 피해 여군장교 항명죄 항소심변론에서 무죄판결 선고 (11.27 대법원 무죄확정판결)
8월	김윤경 펠로우 근무시작(~2009.6)
9.3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승소
10.15	흑석동 재개발구역 세입자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일부승소 (주거기본권확보를위한동작공동대책위원회 공동활동)
10.21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다국적기업 국제 인권기준 국내 적용을 위한 워크숍' 발제
11.7	노숙인쉼터 설치운영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2009

1.8	버마 소수민족 여성에 대한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 승소
1월~12월	용산 철거민참사 관련 활동
1.22	HIV 양성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승소 대법원 확정
2.19~2.21	에비 로스쿨생과 사법연수원생을 대상으로 한 제2회 공감 인권법캠프 개최
4.2	이주 아동 · 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행동 활동 시작
5.2	위법하게 지급된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주민소송 승소
5.25	공감 5주년 기념 세미나 '공익법 운동의 성과와 도전' 및 후원행사 '공감 다섯 살, 참 고맙습니다' 개최
6.25	안주영 간사 근무 시작
7.7	재생산권 침해 베트남 여성 민사소송 승소
9.23	사례로 살펴보는 주민소송 가이드북 '주민소송 사용설명서' 발간
9.24	주택재개발구역 세입자 주거이전비 소송 승소
10.9	시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 정보공개센터와 법률지원 협약
10.13~14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UN 특별보고관 초청 워크숍 기획 및 진행
12.13	외국인 상점 출입국단속 국가배상 사건 승소
12.14	농촌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사건 승소
12.17	'집회 · 시위의 자유와 법정책의 문제점'토론회 공동주최

2010

1.28~2.6	미국 공익법단체 탐방
2.4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분류결정처분 취소소송 제기
2.22~24	제3회 공감 인권법 캠프 개최
3.2	11기 공감 정시인턴 18인 선발
3.9	신윤진 펠로우 근무 시작(~20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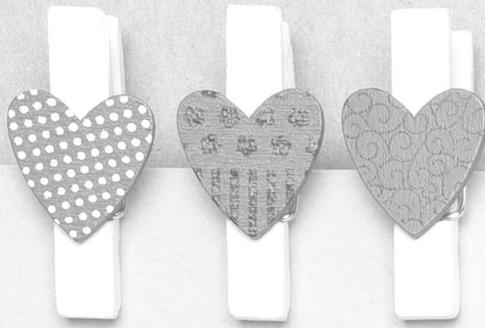
2010

4.19	박영아 변호사 근무 시작
6.1	윤지영 변호사 근무 시작
6.10	군형법 92조 위헌제청사건 공개변론
7.7	김정혜 펠로우 근무 시작(~ 2011.6)
8.31	제12기 정시인턴 23인 선발
9.4	일가재단 '청년일가상' 수상
9.9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분류결정처분 취소소송 승소
9.10	지적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위법 수사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일부승소
10.1~3	일본 변호사연합회 주최 한일외국인법제연구회 참가
10.14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3회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변론
10.21	장애인 성폭력사건 쟁점 토론회 공동주관
11.2	미안마 민주화 활동가 8인 난민신청처분취소 승소
11.26	정신장애인 가족에 대한 이웃의 이사 강요 재정신청사건 공소제기결정
11.30	인신매매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간담회
12.28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12.30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감사패 수상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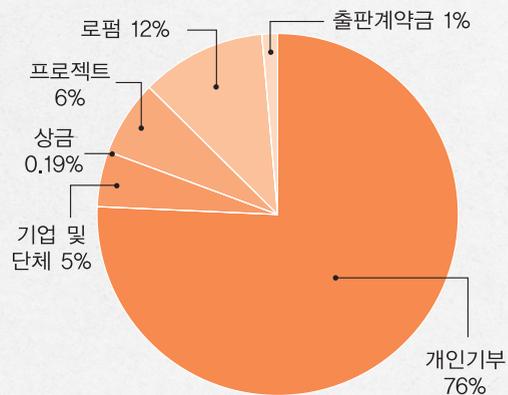
1.25	도시가스검침원 퇴직금 청구소송 승소
1.27	법조언론인클럽에서 수여하는 '올해의 법조인상' 수상
2.1	조혜인 펠로우 근무 시작(~ 2012.1)
2.14~16	제 4회 공감 인권법 캠프 개최
2.24	청각장애인 교수, 대학 측의 명예훼손 고소사건 변호 - 무죄 판결
3.2	경인이주노동위원장 출국명령 효력정지신청사건 인용판결
3.7	13기 공감 정시인턴 24인 선발
4월~6월	강제퇴거금지법 쟁점포럼 진행(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특별위원회 공동 활동)
4.15	'구금시설과 트랜스젠더의 인권' 토론회 주최
4.20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관람불가 취소사건 항소심 승소
4.29	'아시아지역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사례 및 대응방안 모색: 해외한국기업 피해사례 증언 워크숍 공동주최
5.19~8.30	공익변호사 양성을 위한 '공익변호사 라운드 테이블(1차~4차)' 주최
6.19~20	난민의 날 및 난민협약 60주년 기념 '난민과 함께하는 플래시몹' 진행
6.23	베트남 노동자 파업 구속사건 변론 - 무죄 판결
6.29	입양특례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008년부터 진행한 입양법 개정 운동의 결실
7.11~29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11년 한국 정부 심의 회의 NGO 대표단 참석, NGO의 반박보고서 제출
8.27	제10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 에이즈 대회 발표
8.30	여성노동자 직장내 성희롱 실태조사 및 대안연구 토론회 주최
9.5	14기 공감 정시인턴 20인 선발
9.15	미셸 이주노동위원장 비자취소처분 취소소송 및 체류연장불허처분 취소소송 변론
9.21	정신장애인 가족에 대한 이웃의 이사 강요 형사고소 대리 - 일부 유죄판결
10.11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국회 토론회 발제
10.13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위헌에 관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10.18	광주 인화학교사건 해결과 사회복지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발제
11.18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10주년 대토론회 - '인권위 10년, 무엇을 남겼나' 발제
11.18	중복장애 있는 여성 노숙인 방화사건 변호 - 일부무죄 판결
11.28	결혼이주민 체류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주최
12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원안 통과를 위한 성소수자 공동행동 점거시위 및 대응활동
12.10~11	'동아시아의 인신매매와 효과적 대책' 국제회의의 발표
12.14	장서연 변호사, 제6회 무지개 인권상 수상

2011 공감 살림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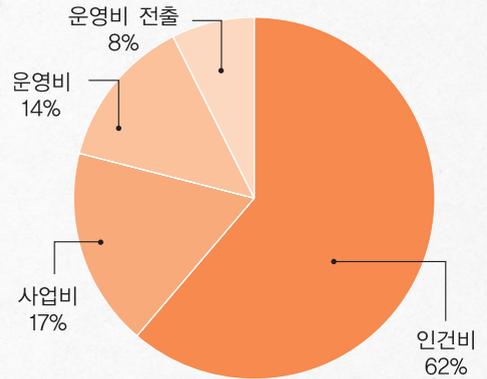
» 수입

개인기부	394,704,330
기업 및 단체	27,362,280
상금	1,000,000
프로젝트	31,193,098
로펌	62,600,000
출판계약금	2,000,000
합계	518,859,708



지출 >>

인건비	311,144,220
사업비	84,798,933
운영비	68,237,719
운영비 전출	40,495,009
합계	504,675,881



- **인건비** : 공감 구성원들의 1년간 급여, 상여의 총 합
- **사업비** : 공감의 1년간 소송, 연구조사, 인턴 및 기부자 지원업무 비용의 총 합
- **운영비** : 공감 사무실 운영 및 구성원 복지 지원 관련비용의 총 합
- **운영비 전출** : 기금의 운용 및 실사 등 지원 관련 사업을 위한 비용(기부금의 일정 비율을 전출로 지출, 기부금 중 대한 운영비 전출비율개인 8%, 기업 10%임)

• 사업비 •

인턴지원	9,018,880
연대단체 지원 및 분담금	1,195,600
법률교육 교통비	318,400
소송지원	6,966,220
인권법캠프	14,002,900
연구조사	32,246,391
기부자지원	19,337,302
홍보	1,713,240
계	84,798,933

• 운영비 •

교육훈련비	5,378,600
도서인쇄비	798,216
복리후생비	34,424,013
사무실 관리비	6,600,000
사무실 유지비	12,118,720
외부지급수수료	5,769,000
회의 및 대외협력비	3,149,170
계	68,237,719

기부자 인터뷰



전농동성당 레시오 마리아 '희늘의 문 백리시디움' 기부자님

우리 나이만큼 되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공감으로 시작한 것 자체가 마음이 통하고 있다는 것이고 처음부터 좋은 일을 택한 것이니 이 꿈을 버리지 말고 계속 이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공감이 아닌 다른 일을 택하더라도 어딜 가든지 당당하고 떳떳하게, 거짓 없는 일을 했으면 합니다.

박순덕 기부자님



저 같은 경우에는 사적으로 저를 필요로 하는 분들과 소통하여 그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사건이 잘 해결된 다음에는 그 분들이 또 사회 곳곳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시면서 기여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공감은 공익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것 아니겠어요? 다만, 저 같은 변호사들이 못하는 부분을 공감에서 전문화하여 하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힘을 보태드리면 서로가 말 그대로 '공감' 할 수 있으니 참 좋겠지요. 그러나 공감은 '법조인들이 반드시 기부를 해 줘야지 내(법조인 자신)가 공감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나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군가가 해 줄 수 있고,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은 어느 직역에서나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오인옥 기부자님



(배상금을 받은 후) 어떻게든 사례를 하고 싶어 소라미 변호사에게 물으니 공감에 후원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그래도 변호사님께 직접 사례를 하고 싶다고 하니 공감은 기부금을 통해 운영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공감에 기부하는 것은 본인에게 주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배상금의 일부를 기부하기로 결심했어요.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공감이 도와줄 때 보탬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명노창 기부자님

(공감이) 인권과 공익을 위한다는 점이 참 매력적이었습니다. 사실, 인권은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굳이 인권을 주장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런 것 없이도 잘 살고 있으니깐요. 그런데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진 사람들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의견이 동등하게 취급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인권은 제대로 된 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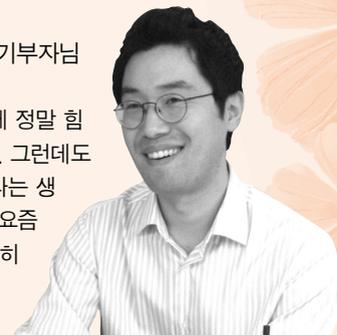
김정익, 최슬정, 김효민, 김지효 가족 기부자님

기부는 나의 작은 공감 실천이라고 생각해요. 남의 입장을 이해해보고 현실적으로 실천해보는 방법이죠. 공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실천해 보는 것.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사회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사회와 공감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 그게 기부인 거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시간을 내어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박정길 기부자님

변호사 분들이 상근으로 일한다는 걸 알고 많이 놀랐어요. 사법고시 합격이라는 게 정말 힘든 일이고 신분의 수직적 상승을 이룰 수 있는 굉장히 큰 관문을 통과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사회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나서는 그 분들을 보니 저도 그런 사람들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분들이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공감을 선택하게 됐죠. 요즘도 가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는데 점점 더 영역도 다양해지고 기사도 많아지고 괜히 좋더라고요. 기부처를 잘 골랐단 생각이 듭니다.



황유인 기부자님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주노동, 아동 등 다방면에 구석구석 사회제도의 큰 틀에서 인권을 바라보고, 정말 법이 필요하고 보호가 필요한 곳에 공감이 있는 게 참 고맙고 든든해요. 공감의 활동이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어요.





2011 기부자와 알콩달콩 공감의 이야기

1,494명의 정기 기부자가 공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공감에 힘을 더해주시는 고마운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1,494분의 기부자님 모두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2012년에도 기분 좋은 부담감을 안고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인권변호사를 꿈꾸는 청소년 모여라!



2011년 8월 17일과 2012년 1월 19일. 이웃과 인권을 위해 꿈을 키워가는 청소년들이 공감 변호사들을 만났습니다. 각자 참석한 이유는 다르지만, 기대에 찬 눈빛과 공간을 가득 채운 따뜻한 열정은 공감을 긴장하게 하고 설레게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할지도 막막하고 처음 준비하는 청소년 행사에 대한 우려도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두 번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그들의 질문에 답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관심과 기대를 채워 갔습니다. 참여한 모든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며 2012년에도 진행될 이 행사에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바자회 수익금 기부

8살의 어린이들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공감의 산타 클로스가 되었습니다. 오마초등학교 1학년 5반 10명의 어린이들과 어머니들이 모여 장난감과 옷가지들을 판 수익금을 공감에 전해 주었거든요.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고사리 손으로 모은 240,500원. 공감에 큰 응원을 보내준 어린이들의 마음이 참 고맙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공감을 응원해 준 것처럼 어린이들의 꿈을 공감도 응원하겠습니다.



붓 끝으로 전하는 마음-재능 기부자 이산 캘리그래피 작가

공감에 전해지는 많은 손길과 마음이 있습니다. 2011년, 공감은 새로운 재능 기부자를 만났습니다. 멋진 글씨로 사람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캘리그래피 작가 이산님입니다. 2012년도 달력의 생기 넘치는 글씨는 이산님의 선물입니다. 이산 기부자님께서 이번 연간보고서의 서체 이미지 작업에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마운 인연, 고마운 마음이 공감은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이산님의 블로그 <http://blog.naver.com/calliblog>

차 한잔의 공감

‘차 한 잔’은 사람과 사람을 맺어 주는 따뜻한 매개체입니다. 공감이 2011년 12월 시작한 ‘차 한 잔의 공감’ 캠페인은 공감과 여러분이 맺어 가는 새로운 관계의 시작입니다.

차 한 잔의 금액을 공감과 나누면 이주민, 장애인, 여성 등 우리 사회의 약자, 소수자로 차별 받고 있는 이들의 삶에 작지만 큰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공감과 함께 나누는 ‘차 한 잔’이 만들어 가는 희망의 이야기를 함께 써 주세요. 여러분이 전해 주시는 차 한 잔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공감기부캠페인

차 한잔의 공감




아름다운 나눔은

내가 나눌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비록 한 사람의 나눔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작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마음들이 모여면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나눔으로 마련되는 '공익변호사기금'은
공익변호사들의 활동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아름다운재단의 '공익변호사기금'을 기반으로 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익변호사기금'은 비영리, 전업으로 공익법 활동을 하는 변호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후원신청

홈페이지 | www.kpil.org (CMS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메 일 | gonggam@gmail.com

계좌번호 | 하나은행 162-910001-07637 (예금주 : 아름다운재단)

- ◎ 아름다운재단은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아름다운재단에 보내 주시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연말정산시 비용 인정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1년 동안의 기부액을 합산하여 이듬해 1월 초에 일괄 우편 발송되며 별도 발행도 가능합니다).
- ◎ 공익변호사기금 기부자님께는 공감이가 발행하는 사업보고서와 자료집 등의 출판물과 온라인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공감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로 공감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2011년 공익변호사그룹 공감과 함께하신 분들입니다.

김성욱	강건우	강경두	강기목	강기탁	강대선	강문혁	강물요나	강민지	강방권	강범구
강서영	강석우	강성원	강세라	강세희	강수정	강영규	강홍현	강윤이	강재상	강지영
강지용	강지현	강진원	강진영	강 찬	강태성	강태영	강현정	강현정	강현택	강지리
고경단	고나무	고민정	고병권	고승정	고원형	고윤정	고은아	고재학	고정대	고정현
고찬욱	고태현	고한나	고현정	공두현	곽노현	곽명진	곽명진	곽솔찬	곽영호	곽우섭
곽인찬	구나영	구민경	구윤호	구인호	권기현	권기호	권명숙	권미애	권방문	권병수
권보미	권새롬	권선익	권순엽	권영국	권영신	권영학	권오근	권오상	권오직	권용선
권승숙	권이선	권 일	권정순	권준율	권철웅	권태선	권택근	권혜진	권 회	금다연
기지서	김갑돌	김강산	김 건	김경모	김경민	김경연	김경완	김경원	김경태	김계순
김광래	김광민	김광석	김광일	김교신	김구동	김국제	김권섭	김권희	김규민	김균기
김기덕	김기운	김기태	김나라	김남연	김남식	김남일	김남희	김대일	김대훈	김도균
김도원	김도진	김동건	김동관	김동신	김동욱	김동욱	김동해	김동현	김동현	김동훈
김동훈	김래현	김루아	김 린	김명내	김명수	김명수	김명원	김문종	김미경	김미경
김미경	김미란	김미선	김미선	김미연	김미윤	김미정	김민경	김민경	김민관	김민석
김민욱	김범식	김범진	김병구	김병국	김병욱	김병욱	김병주	김병필	김보경	김보영
김복기	김봉진	김사강	김상기	김상민	김상웅	김상운	김상은	김상준	김상현	김상현
김서현	김석현	김성길	김성민	김성민	김성우	김성재	김성환	김성훈	김성훈	김성훈
김성희	김세명	김소영	김송이	김수경	김수민	김수열	김수영	김수정	김수지	김수진
김수홍	김숙경	김승희	김순정	김시내	김아름	김연수	김연수	김연숙	김연주	김연주
김영례	김영모	김영민	김영민	김영수	김영수	김영옥	김영옥	김영은	김영은	김영익
김영일	김영주	김영철	김영태	김영훈	김예영	김예원	김예원	김우중	김운환	김운재
김원영	김원정	김원천	김유경	김유라	김유민	김유성	김유진	김윤경	김윤선	김윤선
김윤희	김은숙	김은아	김인석	김인숙	김인식	김인택	김재관	김재경	김재원	김재훈
김정민	김정배	김정선	김정순(오경원)	김정아	김정아	김정예	김정원	김정익	김정일	김정주
김정진	김정현	김정혜	김정화	김정화	김정훈	김정희	김정희	김종모	김종보	김종숙
김종식	김종욱	김종원	김종철	김중하	김중현	김중호	김중호	김주동	김주미	김주옥
김주인	김주혁	김주홍	김준석	김준연	김준혜	김준호	김준희	김지강	김지양	김지영
김지영	김지우	김지원	김지윤	김지향	김지현	김지형	김지혜	김지혜	김지효	김지훈
김 진	김진석	김진숙	김진영	김진영	김진옥	김진옥	김진우	김진욱	김찬역	김창완
김창환	김창환	김채환	김철규	김철민	김춘수	김치윤	김태경	김태준	김태현	김태환
김택용	김관수	김학훈	김한석	김향중	김해성	김행근	김 혁	김현경	김현대	김현미
김현서	김현수	김현숙	김현아	김현영	김현영	김현우	김현임	김현정	김현주	김형동
김형로	김혜경	김혜란	김혜승	김호철	김호태	김홍식	김홍권	김효민	김효진	김희경
김희연	김희원	김희정	김희진	나승철	나영인	나윤경	나윤호	나현채	남경호	남기국
남기연	남민들레	남병영	남윤미	남재욱	남직수	남 현	남화진	노귀선	노미진	노서령
노신국	노영주	노우정	노운선	노현웅	노환철	도원석	류민희	류선호	류신환	류준세
류철민	류하나	류형렬	류현민	류혜정	마상미	마석우	마은정	맹남주	명도창	명재성
명종진	문훈주	문길현	문경민	문경순	문경혜	문규환	문미란	문성원	문속희	문승권
문유민	문정욱	문중석	문준영	문지은	문혜영	민경호	민경홍	민경휘	민동섭	민선영

민세영	민지영	민형기	박가현	박경웅	박경철	박계웅	박광선	박규도	박 근	박금분
박금주	박기례	박기민	박가출	박노민	박노엘	박대인	박다혜	박대협	박동건	박동귀
박래형	박명희	박미선	박민하(김희진)	박노영	박병엽	박상배	박상석	박상원	박서진	박서미
박선옥	박성구	박성례	박성준	박성혜	박세웅	박세희	박소연	박소연	박소영	박소영
박소영	박수찬	박숙경	박숙란	박순덕	박순영	박순주	박시현	박신애	박신애	박신영
박아롱	박연정	박연주	박영란	박영록	박영미	박영배	박영선	박영수	박영아	박영재
박용대	박용식	박용훈	박우진	박원종	박은경	박은미	박은영	박은영	박은주	박은주
박은진	박인석	박종석	박재성	박재형	박정교	박정길	박정렬	박정선	박정준	박정환
박정희	박종욱	박종혁	박주민	박주연	박주영	박주희	박준석	박지영	박지은	박지현
박지혜	박지혜	박지호	박진동	박진석	박진호	박찬중	박찬현	박창서	박철환	박춘희
박평아	박학수	박해옥	박항미	박현규	박현규	박현서	박현숙	박현숙	박현우	박혜선
박혜원	박화정	박화영	박화진	박취영	박취영	박희문	박희중	반미영	방경희	방서은
방선영	배상희	배상현	배선경	배영근	배영희	배의철	배재연	배재영	백영미	백대진
백명주	백봉협	백성진	백수진	백수현	백승영	백신옥	백우철	백은진	백인옥	백종근
백지예	부관석	부지환	서경희	서기준	서미애	서범옥	서상범	서새롬	서선영	서순아
서영란	서은석	서정희	서종현	서지은	서진환	서창호	서창일	서현수	서효민	서희원
석광배	석근배	석현수	선미라	선우아정	선정호	선혜숙	설창효	성갑선	성계숙	성원제
석유학	성은지	성정모	성주영	성창익	성창익	소라미	소민호	소병임	소재욱	손동인
손병욱	손봉기	손준혁	손학렬	송경화	송계동	송미나	송민수	송민수	송민화	송방주
송상교	송승욱	송아람	송윤정	송인호	송주연	송준선	송준현	송지현	송진희	송충렬
송치영	송태현	송하영	신가영	신동석	신민경	신상민	신성아	신용원	신원기	신원제
신윤진	신은선	신은숙	신정희	신종균	신주현	신진화	신창용	신혁재	신현길	신혜성
신효숙	신훈민	심예옥	심재원	심지영	심해웅	심현우	심해성	안명주	안병국	안병정
안상일	안선주	안소연	안영진	안영춘	안영환	안은지	안이수	안인걸	안인걸	안재일
안재한	안종수	안주영	안한진	양가을	양동석	양동욱	양동욱	양선미	양승봉	양승영
양옥수	양인수	양인숙	양정화	양지원	양창영	양현모	양현영	양홍식	양희준	양정희
여광수	여지은	여하연	연수진	연제현	염경용	염규상	염신연	염신희	염 철	염형국
오병두	오상조	오상현	오성열	오성열	오성택	오세면	오수빈	오수정	오승민	오영식
오응철	오인옥	오재동	오재림	오주연	오지은	오진숙	오충진	오현석	오현중	오형석
오혜순	오희영	옥인환	왕정희	왕호습	윤희미	윤희진	우 람	우은주	원경훈	원민경
원주영	원주호	원태연	원희선	위은진	유금녀	유금녀	유성애	유수정	유성욱	유신희
유용호	유 옥	유재연	유재광	유재철	유정혜	유정혜	유정화	유진범	유진숙	유진희
유 현	유혜정	육종성	육태순	윤 경	윤공순	윤규상	윤규성	윤문자	윤민화	윤상균
윤상호	윤선정	윤성운	윤성훈	윤세민	윤수진	윤승희	윤영도	윤영환	윤용구	윤용녀
윤원근	윤자영	윤재훈	윤재훈	윤정숙	윤정원	윤정원	윤정향	윤주현	윤지영	윤지원
윤지은	윤지호	윤진수	윤진호	윤채연	윤치환	윤 탁	윤현정	윤호석	윤홍원	윤홍중
윤화영	은 탁	은현호	이강양	이강우	이경래	이경은	이경은	이경은	이경철	이경호
이관준	이교혜	이 구	이규봉	이금화	이기선	이기선	이기연	이길란	이길재	이나현
이난영	이남진	이다영	이대로	이대성	이동준	이동진	이동희	이명미	이명신	이명욱
이명주	이미연	이미정	이민순	이민영	이민재	이민하	이범주	이범준	이병래	이병록
이병민	이보향	이복자	이분국	이봉석	이봉재	이봉중	이상국	이상도	이상돈	이상률
이석명	이상미	이상봉	이상석	이상연	이상재	이상중	이상필	이상훈	이상희	이서진
이석재	이 선	이선기	이선영	이선임	이선희	이성우	이성진	이성희	이세라	이세리
이소아	이소의	이 송	이수영	이수진	이수진	이수현	이수형	이수희	이숙희	이순자
이승윤	이승한	이승한	이심가은	이연주	이연덕	이연진	이영래	이영일	이영주	이영주
이영창	이영호	이예화	이용석	이우성	이우철	이우철	이원석	이유경	이유경	이유정
이윤정	이은수	이은숙	이은숙	이은숙	이은실	이은열	이은영	이은옥	이은일	이은주
이은지	이은희	이의석	이인경	이인영	이인호	이 일	이일권	이임하	이재현	이정우
이재민	이재숙	이재승	이재식	이재양	이재엽	이재욱	이재한	이재형	이재형	이재호
이재훈	이정란	이정민	이정민	이정섭	이정애	이정은	이정인	이정인	이정임	이정진
이정호	이정환	이정훈	이정희	이종미	이종수	이종수(김일영)	이종식	이종식	이종호	이종은
이중희	이주용	이주창	이주현	이주희	이준석	이준석	이중원	이지형	이지혜	이지환
이진숙	이진영	이진우	이진주	이찬진	이찬호	이찬호	이창형	이철규	이츠희	이치선

이탄희	이태상	이태영	이태호	이태훈	이하윤	이학준	이한본	이한주	이행규	이현서
이현종	이현주	이형근	이형석	이형수	이형자	이혜민	이해은	이해욱	이해정	이혜진
이 호	이호중	이호철	이홍관	이홍기	이홍철	이화섭	이화희	이효건	이효경	이훈우
이희만	이희면	이희숙	이희숙	이희순	이희승	임기용	임나래	임남규	임대원	임문모
임미숙	임소영	임세은	임소정	임승빈	임예지	임 용	임원범	임정덕	임종춘	임종은
임 건	임진홍	임창수	임창현	임채민	임채복	임춘화	임통일	임현택	임혜연	장기진
장 세연	장승옥	장달리	장도중	장동욱	장명숙	장미희	장은경	장서연	장성윤	장세명
장정환	장준규	장창현	장철익	장 품	장영석	장유식	장은경	장은영	장은중	장인수
전명숙	전민식	전병규	전상배	전상윤	전선희	전선희	전성아	전소라	전아람	전연미
전용범	전원진	전일호	전정현	전주열	전지성	전지원	전지홍	전태연	전현실	정경순
정경애	정계선	정계현	정관주	정광준	정규빈	정금영	정낙식	정남숙	정남순	정남운
정다은	정대성	정동현	정래익	정려정	정만준	정명희	정미화	정민민	정 빛	정서희
정석원	정성훈	정성운	정성희	정세진	정소연	정수민	정수현	정순열	정승원	정승진
정아람	정아람	정아선	정애나	정영옥	정연주	정영선	정영선	정용승	정우성	정원경
정원락	정원섭유	정원일	정운아	정윤희	정은아	정은영	정은주	정은화	정인섭	정인영
정인영	정일홍	정일호	정재우	정재욱	정재필	정재국	정정국	정정환	정정환	정종국
정주현	정준영	정준영	정지선	정지웅	정진규	정창권	정태훈	정하주	정해진	정현숙
정현숙	정현철	정혜선	정혜원	정혜진	조강수	조광희	조대연	조대회	조라정	조무재
조문성	조문숙	조민혜	조범석	조병규	조병준	조복희	조봉균	조상균	조서연	조선영
조성경	조성숙	조성희	조수민	조시현	조영국	조영연	조영옥	조용기	조용수	조용하
조은혜	조이여울	조인섭	조장천	조정은	조정익	조정현	조주영	조준영	조찬연	조태미
조현복	조현빈	조현용	조현주	조현지	조혜련	조혜인	조혜정	조혜주	조홍택	조호민
조희경	조희경	주두수	주선하	주영옥	주익철	지 박	지성은	진갑현	진민정	진영호
차강진	차영록	차용선	차정숙	차지훈	차혜령	채경옥	채금희	채만기	채성희	채승우
채양희	채희상	채희선	채희정	천경송	천만우	천유진	천정훈	최가영	최강욱	최건섭
최광식	최규선	최근우	최기상	최달용	최명길	최미림	최미영	최번기	최병선	최서연
최서운	최서훈	최서희	최석균	최선주	최성규	최성보	최성일	최세일	최세현	최수희
최숙희	최승아	최승진	최영동	최영재	최용범(페이퍼로드)	최용직	최용혁	최용혁	최용영	최원근
최 유	최유경	최유신	최윤나	최윤석	최윤수	최윤정	최윤철	최은수	최의실	최인선
최정호	최재신	최재영	최재욱	최재홍	최정규	최정윤	최정은	최정은	최정환	최종선
최주희	최지연	최지은	최지혜	최지혜	최진영	최창문	최창민	최철기	최현순	최현오
최호정	최호진	최희정	최희태	추재식	추혜윤	편수진	표승빈	피세진	하상혁	하상현
하성우	하승수	하승연	하정민	하종관	한경수	한계영	한기영	한대웅	한미영	한민영
한보경	한보석	한상률	한상엽	한성일	한성일	한수경	한승미	한승수	한승주	한아름
한연규	한영미	한영미	한이경	한재호	한종섭	한종섭	한중호	한지영	한진희	한창남
한창훈	한화숙	한효은	함은혜	허누리	허용하	허용하	허인회	허정집	현병철	현우영
홍두의	홍 민	홍부식	홍상민	홍성백	홍성진	홍세화	홍소현	홍수연	홍수희	홍아현
홍영재	홍윤선	홍윤철	홍은기	홍정화	홍종남	홍주환	홍지은	홍초롱	홍희경	황가혜
황경모	황규인	황사덕(조정숙)	황성민	황성민	황성아	황성현	황아미	황영명	황영미	황용기
황유섭	황의중	황의홍	황인이	황인탁	황재호	황중희	황지영	황지현	황진희	황해광
황 현	황현정	황혜진	황호연	공감화이팅	나눔참여합니다	작은정성	좋은세상만들기	좋은세상만들기	무명2	무명2

(사)세계한인번호사회
 원형건축사사무소
 김·장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다운
 대시순풍한의원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전농동성당 레지오 마리아 '하늘의 문' 뿌리사디움

(주)센티널테크놀로지
 (주)미래스타
 법무법인 윈
 법무법인 지평지성
 목동순풍한의원
 성균관대 경쟁법학회

(주)팬택씨앤아이
 지에스칼텍스(주)(매칭그랜트)
 법무법인 한결
 국가인권위원회
 공주녹색연합
 도봉곳간지킴이

용지건설신흥(주)
 보누스출판사
 법무법인 한누리
 UNHCR
 군이명피해자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염형국

"아름다운 고이는 사랑이여라."
- 김민기의 노래 <아름다운 사랑> 가사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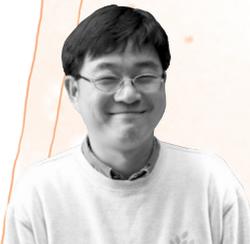
소라미

나이 들수록 느끼는 요즘. 공감하는 '감응력'이
절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슴 파르르 떠는, 코 시큰해지는,
눈시를 붙여지는 2012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정정훈

동료들과 활동가들, 그 밖의 여러 관계로부터 항상 배우고 또 배웁니다.
그 배움이 아직 내 삶의 내력으로 내리어앉아 있지는 못하지만,
항상 나를 일깨우는 힘으로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강필규

다수가 쉽게 공감하기 어렵더라도 '불편한 진실'에 더 다가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구조화된 사회 '현상'임을 더 드러내는 것.
공감의 용기와 결단,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이 더 필요합니다.



장서연

"키 큰 나무 숲을 지나고 나니, 내 키가 커져 있더라"
이느듯 공감 5년차입니다. 제 키를 키워주신 동료들,
활동가들, 동지들, 그리고 기부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에필로그



전은미

공감과 연을 맺는 이들이 서로 깨우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곳에 꼭~ 함께하고 있으니
매 순간 기쁘지 아니한가



차혜령

2012년에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떤 사람들 만날까?
어떤 일을 하게 될까? 나는 또 어떻게 바뀌게 될까?



안주영

무언가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이끄는 신뢰와 격려에,
오늘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박영아

근래 들어 나에게 "하면 된다"는 식의 상투적인 말들이
새삼스럽게 화두가 되어가고 있다. 그만큼 더 진지해지고 있는 것이겠지 한다.



윤지영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든든한 지지와 후원까지 받으니 속스러울 따름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늘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2011 연간보고서

발행일 2012년 3월

발행처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158-1번지 북촌창우극장 3층
TEL 02-3675-7740 FAX 02-3675-7742
www.kpil.org

편 집 안주영

디자인 동방기획(02-2277-0365)